

주거급여 추계방법 및 전망모형 개발

-2023. 11.-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 우 형

주거급여 추계방법 및 전망모형 개발

2023. 11.

연구책임자 홍 우 형 (동국대학교)
공동연구원 이 정 택 (동국대학교)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주거급여 추계방법 및 전망모형 개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홍우형 (동국대학교)

2023년 11월

한국재정학회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주요 내용	2
가. 연구범위	2
나. 연구내용	4
제2장. 주거급여 개요 및 현황	6
1.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주거급여 개괄	6
2. 현행 주거급여 운영체계	8
가. 주거급여 수급요건	8
나. 주거급여 지급체계	21
3. 주요 제도 연혁	25
가. 통합형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변화	25
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주요 변화	28
제3장. 선행연구 고찰	33
1. 주거급여 관련 선행연구 검토	33
2. 추계방법론 선행연구 검토	36
가. 해외문헌	36
나. 국내문헌	40
다. 기존 추계방법론의 주거급여 전망모형 적용 가능성 검토	45
제4장. 주거급여 전망모형 설계	46
1. 전망모형 개괄	46
2. 주거급여 전망모형 설계	48
가. 1단계: 주거급여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	48
나. 2단계: 가중치 도출	60

다. 3단계: 제도변화 반영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	61
라. 4단계: 가중치를 반영한 추정치 도출	64
마. 5단계: 시계열 전망모형 설계	65
제5장. 주거급여 전망모형 추정결과	70
1. 제도변화를 반영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결과	70
가.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결과	70
나. 연도별·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결과	72
2. 시계열 모형 추정 및 전망모형 설계	74
3. 전망모형 추정결과	78
제6장. 결론	88
1. 요약	88
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92
참고문헌	94

표 목 차

<표 II-1>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지급액 현황	7
<표 II-2> 사용대차유형에 따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산정기준	12
<표 II-3> 가구특성지출 공제 대상 소득 및 지출	14
<표 II-4> 수급자 유형별 근로소득 추가 공제 현황 (2023년)	15
<표 II-5>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 (2023년)	16
<표 II-6> 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산정기준	17
<표 II-7>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17
<표 II-8>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2023년)	19
<표 II-9> 부채 인정범위	20
<표 II-10>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21
<표 II-11> 임차급여 산정 방법	22
<표 II-12> 임차급여 산정기준: 기준임대료 (2023년)	23
<표 II-13> 수선유지비(수선주기) 및 수선내용 (2023년)	24
<표 II-1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법	25
<표 II-15> 주거급여 개편 비교표	28
<표 II-16> 급지별 기본재산액	32
<표 III-1> 해외 선행연구 정리	38
<표 III-2> 국내 선행연구 정리	43
<표 IV-1> 가구 규모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	50
<표 IV-2> 수급 가구 내 가구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52
<표 IV-3> 가구특성지출 공제 대상	53
<표 IV-4> 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산정기준	55
<표 IV-5>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55
<표 IV-6> 급지별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	56
<표 IV-7> 급지별 기본재산액	58

<표 IV-8> 부채의 인정 범위	58
<표 IV-9> 가계금융복지조사 DB의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 미보유 변수 현황	59
<표 IV-10> 연도별 주거급여 제도를 반영한 추정 수급 가구 수	60
<표 IV-11> 가구 규모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	62
<표 IV-12> 2022년 수급 가구 내 가구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62
<표 IV-13> 급지별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	63
<표 IV-14> 급지별 기본재산액	63
<표 IV-15> 2023년 주거급여 제도를 반영한 연도별 추정 수급 가구 수	63
<표 IV-16> 가중치 보정 추정 수급 가구 수	64
<표 V-1> 연도별 가중치 보정 수급가구수 추정	70
<표 V-2> 연도별 권역별 실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72
<표 V-3> 연도별 권역별 가중치 적용 추정치	72
<표 V-4> LASSO 추정 결과	75
<표 V-5>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 결과	76
<표 V-6> 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모형의 예측력 비교	77
<표 V-7> 2023년 제도 적용 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전망결과	79
<표 V-8> 전국 수급 가구 수 전망결과	82
<표 V-9> 권역별 임차급여 평균 지급액	84
<표 V-10> 전국 주거급여 재정소요 전망결과	85

그 립 목 차

<그림 II-1>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지급액 추이	8
<그림 II- 2> 소득인정액 산식	8
<그림 II- 3> 2015 이전 부양능력 판정 도해	30
<그림 II- 4> 2015 이후 부양능력 판정 도해	31
<그림 V-1> 연도별 실제 수급 가구 수와 연도별 가중치 보정 수급 가구 수	71
<그림 V-2> 연도별 실제 수급가구수와 연도별 가중치 보정 수급가구수	73
<그림 V-3> 2023년 제도 적용 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전망결과	80
<그림 V-4> 2023년 제도 적용 전국 수급가구수 전망 결과	83
<그림 V-5> 전국 수급가구수 최종 전망 결과	83
<그림 V-6> 전국 주거급여 재정소요 최종 전망 결과	86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까지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를 비롯한 주거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더욱 위협받고 있어, 최저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주거비용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로 최근 몇 해 동안 주거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제 여건의 변화로 전반적인 주거비용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최근 매년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
 - 정부는 수급자격을 기준중위소득 45%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 현행 47%까지 확대하였으며, 이후 수급자격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며,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지닌 가구 내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있어, 비적정주거 거주자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음
- 이처럼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상당한 제도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주거급여 재정소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주거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제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엄밀한 전망모형을 구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기존의 재정소요 추계방법론에서는 이처럼 제도변화를 엄밀히 추계할 수 있는 전망모형이 부재한 상태로 볼 수 있음
 - 현재는 과거의 주거급여 재정소요 추세를 활용하여서 향후 주거급여 규모를 추정하는 데 그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급격한 제도 변화가 예상될 때 상당한 추정오차를 수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주거급여의 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엄밀한 전망모형을 구축할 필요성이 존재함

□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 및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에 대한 다양한 추계방법을 검토하고, 특히, 주거급여의 급격한 제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전망모형을 개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주거급여 재정소요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정치하고 안정적인 전망모형에 기반한 주거급여 재정소요 전망을 통해 예측력을 제고하여 재정지출 예측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예측력을 증진시킨 전망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 주요 내용

가. 연구범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 복지정책이며, 동 제도에서 저소득 가구의 소득보전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재할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의료급여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임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됨
-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됨

-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연구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거급여는 과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15년 7월 이후 주거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하고 주거급여의 규모나 지급방식 등은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주택문제 및 주거비용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경제여건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주거급여는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며, 이를 위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급여이며,
 - 수선유지비는 자가의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택의 노후화 등에 따른 수선비를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 이같은 급여는 지역별 주거비용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주거비용의 전반적인 상승에 대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가 확대 운용되고 있음
 - 2021년부터 주거급여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청년 가구원이 취업 등의 이유로 분리하여 거주할 경우에 해당 청년가구원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또한 최근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에서 47%이하까지 완화되었으며, 향후 정부는 이를 50%까지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연구범위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주거급여의 재정소요

를 예측할 수 있는 엄밀하고 정치한 전망모형을 설계하고 개발하고자 함

-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가구 분리 지급,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임차급여의 수급가구수와 재정소요를 추정하고 전망하는 데 집중함

나. 연구내용

□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계 및 단가 전망 관련 기존 추계방법론 조사 및 분석

- 주거급여와 같은 정부 복지정책의 경우 경제여건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의해서 제도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
- 이같은 제도특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의 재정소요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추계방법론을 기존문헌을 통해 조사
- 이를 위해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과 조세수입 등을 추계한 기존문헌에 나타난 다양한 추정모형을 검토
 - 기존문헌에 따르면, 크게 거시경제모형과 시계열 모형을 전망모형으로 활용함
 - 거시경제모형은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사회전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추정에 활용되며, 주로 동적일반균형모형을 확장한 전망모형을 활용하고 있음
 - 시계열 모형으로는 회귀분석 추정, 시계열모형 및 평활법, 거시계량모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문헌 고찰을 통해 나타난 추계방법의 장단점 검토하고, 주거급여에 나타난 제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추정모형을 검토하여 적정 방법론을 제안

□ 본 연구의 전망모형은 우선적으로 미시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급가구수 및 주거급여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때문에 주거급여 추정에 적합한 다양한 가용자료 검토함

- 주거급여에 대한 미시시뮬레이션은 가구 및 가구원 정보를 담은 미시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는 자료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및 주거실태조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중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사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함
 -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 사용되는 소득, 자산, 부채

등의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주거급여 관련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됨

□ 주거급여 전망모형 개발 및 설계

- 본 연구에서는 주거급여 재정소요에 대한 예측을 위해 미시 시뮬레이션과 시계열 모형을 결합한 모형을 구축함
-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상 제도변화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망모형에 이같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미시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모형을 구상함
- 미시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변화를 반영한 주거급여의 재정소요를 추정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여 주거급여 추계모형을 적용함
-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각 추계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여, 예측력이 가장 높은 전망모형을 설계함

제2장. 주거급여 개요 및 현황

1.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주거급여 개괄

- (기초생활보장 제도 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임
 -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면서,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빈곤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2015년 7월부터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각 급여를 개별화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주거급여 역시 개별급여로 독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됨

-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음
 -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함
 - 주거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함
 -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함
 - 교육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함

- 본 연구의 대상인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함
 - 주거급여는 주거형태(즉, 자가/임차)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임차 수급자에게는 수급자의 가구원 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함
 - 또한 최근 2021년 1월부터는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

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하고 있음

-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을 정리한 <표 II-1>과 이를 도식화한 <그림 II-1>을 살펴보면, 시행 이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시행 초기 2001년 69.8만 가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2018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여 현재 약 162만 가구가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18년부터 나타난 수급가구의 증가세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주거급여 지급액 또한 2006년 3,347억원 수준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2년에는 2조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15년부터 나타난 주거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맞춤형 급여 체제로의 변환에 따른 수급가구와 지급액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표 II-1>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지급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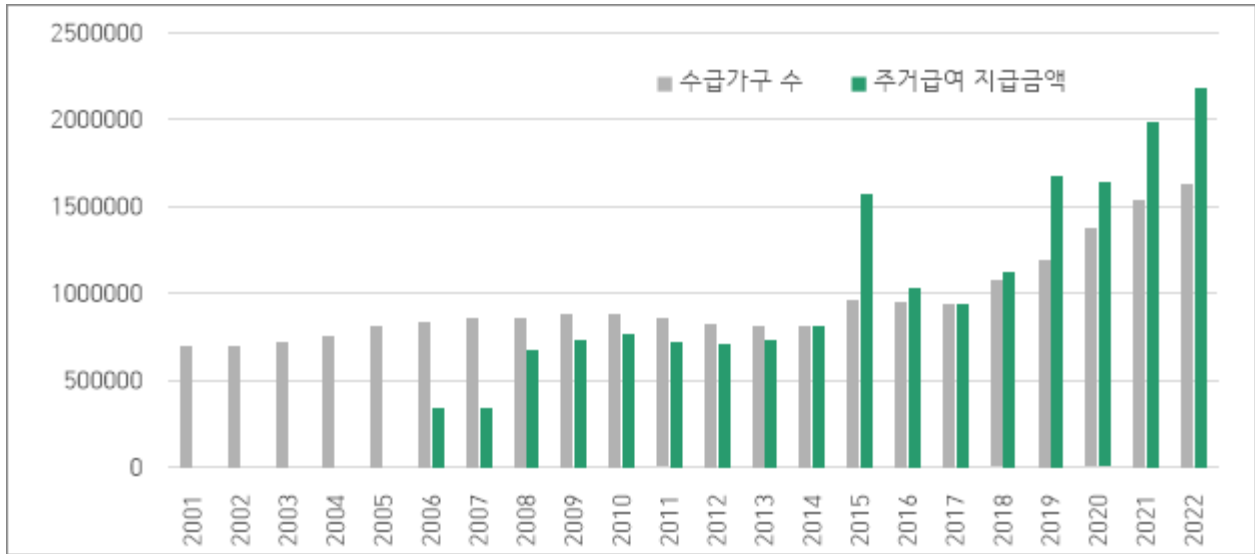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수급가구 수	주거급여 지급액
2001	698,075	-
2002	691,018	-
2003	717,861	-
2004	753,681	-
2005	809,745	-
2006	831,692	334,704
2007	852,420	340,082
2008	854,205	670,374
2009	882,925	726,723
2010	878,799	762,494
2011	850,689	721,119
2012	821,879	704,246
2013	810,544	726,550
2014	814,184	805,715
2015	959,193	1,573,200
2016	945,348	1,028,936
2017	935,767	939,889
2018	1,069,536	1,125,210
2019	1,187,953	1,672,930
2020	1,367,456	1,632,475
2021	1,533,918	1,987,925
2022	1,628,643	2,181,925

주: 복지로, 보건복지 통계연보, 국토교통부 예산서를 참고해 저자 재구성

자료: 2001~2015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수, 2016~2022년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복지로, 2006~2014년의 주거급여 집행실적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5~2021년의 주거급여 집행실적은 국토교통부 예산서를 참고함

<그림 II-1>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지급액 추이



2. 현행 주거급여 운영체제

가. 주거급여 수급요건

- (수급요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인정액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향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될 예정임
 - 이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됨
 -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산출함
 -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소득인정액은 <그림 II- 2>와 같은 산식에 의거하여 산출함

<그림 II- 2> 소득인정액 산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요건)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요건 외에 부양능력이 있는 가구를 수급가구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요건이 수급요건으로 존재하였으나,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요건이 폐지됨
- 2018년까지 기존 수급권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시에 부양의무자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 중인 부양의무자 등
 -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등
 -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1) 소득인정액의 산정: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비용과 그 외의 비용을 제외한 소득으로 산출함

□ (실제소득)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됨

- 소득의 종류별로 조사 주기가 상이하므로 월 단위로 조사하는 소득의 경우 전월 소득을 반영하며, 연 단위로 조사하는 소득(예: 사업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반영함
-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을 포함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처럼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함
 - 상시근로자 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임
 - 일용근로자 소득은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 건설공사 종사자, 공공일자리 소득 등을 포함함
 - 자활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함
 - 공공일자리 소득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임금을 의미함
-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을 포함함
 - 농업소득은 경작면적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추정함
 - 임업소득은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임
 - 어업 및 양식업 소득은 어가(漁家) 및 양식업가가 어업 및 양식업 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 기타 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임
-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포함함
 - 임대소득은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
 - 이자소득은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¹⁾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²⁾을 차감한 금액이며, 전년도 이자소득을 당해 연도 이자소득으로 반영함
 -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입법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함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서 조회되는 이자소득으로 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함

2) 생활준비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사적 이전소득은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 소득을 포함함
- 공적 이전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을 의미함

○ 다음의 소득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학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과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됨

○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의미함

- 정가지원이란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
-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중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나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함
-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가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함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혹은 무료임차소득)은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을 의미함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전·월세 포함)에 사용대차로

-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에게 부과함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보다 높을 수 없으므로 부과 최고금액은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이며, <표 II-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용대차유형에 따라 부과금액(사적이전소득)을 다르게 산정함

<표 II-2> 사용대차유형에 따른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산정기준

구분	산정방법
부양의무자에게 전체를 제공받는 경우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 (A)
부양의무자에게 부분을 제공받는 경우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의 78% (A×78%)
제 3자에게 전체를 제공받는 경우	
제 3자에게 부분을 제공받는 경우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의 20% (A×20%)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의미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다음의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 복지급여 관련 이전소득: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 기타 공적이전소득: 연금급여(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수당 등
 - 그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정부 지원금³⁾
- 다음의 항목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됨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체육인 생활안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의 금액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생활지원금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생

3) 자동차손해배상에 대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참전유공자예우에 따른 각종 급여, 진폐위로금,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연금 및 수당,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위로지원금, 간호수당·부양가족수당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구직촉진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이 포함됨

계지원금 중 월 10만 원 이내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정책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함

○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장애아동을 둔 가구를 위한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 차 사고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지출한 의료비 등

○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지출한 의료비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센인 피해사건에 따른 위로지원금

○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등
-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구체적인 가구특성지출비용은 <표 II-3>과 같음

<표 II-3> 가구특성지출 공제 대상 소득 및 지출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 여부	가구특성 지출공제 포함여부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참전명예수당		○	△
기초연금		○	×
장애수당	장애수당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	×
	공무원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	×
실업급여		○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
진폐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 등	○	×
독립유공자 보상금		○	×
진폐위로금		○	×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연금, 장애연금, 간호수당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	○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
지자체 지원	아·통장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
	조례 비(非)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	○
	간병비	○	○
	특수식이구입비	○	○
만성질환 등의 3개월 이상 의료비		×	○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 (75%)		×	○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축산 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논활용직접지불금, 기본직접지불금	○	○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	○
대학생 등록금 지출		×	○
구직촉진수당		○	×

-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함
-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를 적용하며, <표 II-4>에 제시한 수급권자에게는 추가공제를 적용함
 - 이때,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함

<표 II-4> 수급자 유형별 근로소득 추가 공제 현황 (2023년)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만 65세~74세 노인, 임신부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지무요원, 상근예비역1)	근로·사업소득	30%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주: 1)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2) 소득인정액의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 먼저,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함
 - 예컨대, 2023년 기준 서울 거주 가구의 주거용 재산 가격이 1억이고 부채가 5천만

원이면, 주거용 재산 가격을 초과하는 공제액(1억 원 - 9,900만 원(기본재산액) - 5,000만 원(부채) = 4,900만 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산출 시 공제함

- 일반재산 산출 중 공제액이 일반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며, 금융재산액 역시 초과하면 자동차 재산가액만을 소득평가액으로 환산함
-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에 재산의 종류(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별로 서로 다른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이에 자동차 가액을 더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함
- 즉,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그리고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함

□ (재산의 종류) 소득인정액 산출 시 고려하는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구분됨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함

□ (주거용재산) 주거용 재산은 수급권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유 혹은 임차한 재산을 의미하며,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일정 한도(<표 II-5> 참조)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함

- (주거용 재산의 범위) 주거용 재산은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의됨
-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표 II-5>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함
 - 한편, 부양의무자의 경우 거주여부, 적용한도 구분 없이 상기 주거용 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함

<표 II-5>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 (2023년)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한도액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구분되며, <표 II-6>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가액을 산정함

○ 일반재산 중 토지의 경우에만 지역별로 가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개별 지역의 토지가격 적용률은 <표 II-7>과 같음

<표 II-6> 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가축, 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표 II-7>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	0.9 (전지역)
부산	0.9 (전지역)
대전	0.9 (전지역)
인천	0.9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0.8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	0.9 (區 지역) / 0.8 (달성군)
광주	0.9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 (남구)
울산	0.9 (區 지역) / 0.8 (울주군)
세종	0.8 (전지역)
경기도	0.9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 0.8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 0.7 (용인시의 처인구) / 0.6 (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 (區 지역) / 0.8 (郡 지역)
충청북도	0.9 (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0.8 (청주시 邑·面지역, 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 (區 지역) / 0.8 (郡 지역)
전라북도	0.9 (區 지역) / 0.8 (郡 지역)
전라남도	0.9 (區 지역) / 0.8 (郡 지역)
경상북도	0.9 (區 지역) / 0.8 (郡 지역)
경상남도	0.9 (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 0.8 (창원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 (전지역)

□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⁴⁾, 보험상품⁵⁾으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 계산 시 생활준비금과 장기금융저축금액 등을 공제하고 금융재산 가액을 계산함

○ 다음의 경우에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를 적용함

- (생활준비금)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 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며, 이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됨
- (장기금융저축공제) 정기예금·적금, 저축성 보험, 펀드 중 3년 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을 공제함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적립금 등⁶⁾을 공제함

○ (금융재산의 범위 및 산정) 금융재산은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ISA 계좌⁷⁾: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 최종시세가액
- *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적용함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성격(예: 교통사고보험, 민간 건강보험 등)의 수령액은 일시금에 해당하기에 금융재산으로 반영함

4) 금융자산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수익증권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함

5)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사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함

6)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과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이 금융재산 공제액에 포함됨

7)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 외에 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합 운영

- (기타 산정되는 재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에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구분함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
- (기본재산액)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하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함
 -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표 II-8>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2023년)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자동차) 자동차는 장애인 가구 여부, 용도, 배기량, 차령에 따라 다르게 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함
 -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동일 조건의 수급(권)자를 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는 자동차 가격을 100%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제외함
 - (자동차 가격 50% 감면) 생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등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함⁹⁾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등 가구별 1대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등 가구별 1대의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8)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1~3급인 수급권자

9)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함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며, 이로 인해 자동차 보유 여부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 선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함

- (부채) 부채는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구성되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채 역시 기본재산액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함
 - 부채 중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함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가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일 때만 해당 금액을 차감함
 -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표 II-9> 부채 인정범위

구분		인정범위
부채 출처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사채	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사채만 인정
	임대보증금	○
부채의 지출형태 제한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가액에 대해 수급권자는 주거용 재산에 월 1.04%, 일반재산에 월 4.17%, 금융재산에 월 6.26%, 자동차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부양의무자는 주거용 재산에 월 1.04%, 그 외 재산은 월 2.08%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바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토지가격은 토지가격 적용률을 따로 적용함

- 토지가격(가액) = 시가표준액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은 <표 II-7>과 같음
- (환산율 설정 원리) 환산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률)과 다르며, 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역대 이상의 재산보유자도 수급(권)자로 선정 보장되는 문제가 발생함
 - 예컨대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는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은 2년 이내 소진하는 것을 산정하여 도출한 것임 ($4.17\% \times 24\text{개월} = 100\%$)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장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함

<표 II-10>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나. 주거급여 지급체계

-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 요건을 만족하는 수급권자에게 임차급여 혹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함
 -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수급가구에 지급함
 -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에 지급함
- 또한 2021년부터는 거주지를 달리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의 생활보전을 위해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함
 - 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

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청년가구)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하는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1) 임차급여

- 임차급여는 주거급여의 수급요건을 만족하고,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급됨
 - 주거급여의 수급요건인 소득인정액 요건은 2023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임차급여의 지급) 임차급여는 <표 II-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그 크기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여 지급함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함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보다 큰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만큼 뺀 금액을 임차급여로 산정함
 - 이때,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자기부담율 30%를 적용하여 계산함
 -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전세가격, 임대료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임대료는 <표 II-12>에 제시함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표 II-11> 임차급여 산정 방법

급여 대상자	임차급여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¹⁾ 의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율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주: 1)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고 보증금 원 환산액과 월차임을 모두 합하여 산정

<표 II-12> 임차급여 산정기준: 기준임대로 (2023년)

(단위: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2) 수선유지급여

-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의 수급요건을 만족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지급됨
 -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 수선유지비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경·중·대보수)와 소득인정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 1차적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고, 각각 3년, 5년, 7년의 주기로 수선비용의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함
 - 경보수는 도배, 장판 등을,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수선하고, 대보수는 지붕, 옥실 및 주방개량 등을 수선함
 - 수선비용 한도액은 <표 II-13>에 제시한 보수범위별 금액에 소득인정액의 크기별로 차등하여 결정함
 - 2023년 기준 보수범위별로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의 한도 내에서 수선비용을 결정함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보수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100%까지 지급함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기준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보수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90%까지 지급함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5%를 초과하는 경우 보수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80%까지 지급함

<표 II-13> 수선유지비(수선주기) 및 수선내용 (2023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한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1~)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청년가구)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 월을 적용함
 - (임차계약)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함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함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를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인 경우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음
 -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인정함

- (지급 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 각각의 임차급여로 구성되며,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의 임차급여 산정 시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함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함
 - 자기부담분은 총 가구원수 대비 분리된 가구원수 비율로 부담하여 적용함
 - 청년 주거급여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나누어 지급하며,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월차임을 우선 지급함

<표 II-1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법

급여 대상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율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해당가구원 / 총 보장가구원))

3. 주요 제도 연혁

가. 통합형에서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변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2015년 7월부터 각 급여를 개별화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주거급여 역시 개별 급여로 독립함
- 맞춤형 급여체계는 급여종류별로 수급가구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기존 제도의 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승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주거급여법을 추가하여 근거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됨
- (수급요건 변화) 수급가구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은 중생보(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도록 개편됨
 - 통합형 체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 반면, 맞춤형 체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봄
 -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임
- (급여 지급체계 변화) 주거급여 지급체계는 통합형에서 주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는 체계였으나 맞춤형에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체계로 변화함
 - 통합형 체계는 거주하는 가구의 소유 여부에 따른 구분 없이, 즉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주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지급하다가 2012년부터는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즉 임차가구에게만¹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함께 지급함
 - 주거급여액에서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하였으며,
 - 산출된 가구별 주거급여액이 정해진 현물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면 주거급여는 현금급여만 실시함
 - 맞춤형 체계에서는 임차가구에게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게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함
 - 즉, 현행체계에서는 한 가구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반면, 통합형 체계에서는 한 가구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지급금액) 통합형 급여체계에서는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정액급여 체계였으나, 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임차급여를 지급함

10) 2011년까지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가구에 가구별 현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지급대상이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가구로 바뀜. 이때 ‘자가가구 등’은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를 가리킴.

- 통합형 체계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현금지급 기준금액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었음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맞춤형 체계에서는 임차 가구에게 임차급여 지급 시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자가 가구에게 수선유지급여 지급 시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함
 - 임차가구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준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보다 크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만큼 뺀 금액을 임차급여로 산정함
 - 자가가구의 경우, 1차적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2차적으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경·중·대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을 100~80%까지 차등지원함
- (현물급여 집행체계) 통합형 체계에서는 지자체가 보장·전담을 맡았으나 맞춤형 체계에서는 지자체가 보장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기관을 맡음
- 통합형 체계에서의 현물급여 집수리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등이 담당함
 - 반면, 맞춤형 체계에서는 보장기관(지자체)과 전담기관(LH)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 수선유지급여 실시를 위해 보장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범위별 당해 연도 수선 대상, 수선 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을 전담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가 줄어든 수급가구에게는 제도개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보장성 감소를 방지하고자 이행기 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을 두어, 이행기의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함
- <표 II-15>에는 통합형에서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면서 나타난 주거급여 제도의 주요 변화를 정리하여 제시함

<표 II-15> 주거급여 개편 비교표

구분	종전 주거급여 (2015. 6월 이전)		개편 주거급여 (2015. 7월 이후)	
근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6% 이하	
급여의 종류	(~2011년) -임차가구: 현금, 현물 -자가가구: 현금, 현물	(~2012년) -임차가구: 현금 -자가가구: 현금, 현물	-임차가구: 임차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금액	<정액급여>		<정률급여>	
	-주거급여 지원금은 현금 급여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의 22.032%임 (현금지급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77.968%) + 주거급여(22.032%))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현금지급 기준금액이 최저 보장 수준임		임차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가 가구	-1차적: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중·대로 구분 -2차적: 소득인정액에 따라 경·중·대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을 100~80%까지 차등지원
전달 및 집행 체계	보장기관(지자체) -현물급여 집수리는 지역자활센터, 자활 기업 등이 담당		-보장기관(지자체): 신청접수, 보장결정 및 지급, 운영 관리 -전담기관(LH): 보장기관이 전담기관에 의뢰하여 주택조사(신청, 확인 조사), 연간 수선계획 수립, 수선유지급여 실시	

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주요 변화

(1) 주거급여 수급대상 확대

- 2015년 이후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기준은 총 4차례에 걸쳐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급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기준소득 대비 50%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임
- 수급요건은 소득인정액 대비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함
 - 2015년부터 2018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2019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
- 2020년부터 2021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 2022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
- 2023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향후 점진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까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확대할 계획임

(2) 부양의무 요건 완화 및 폐지

- 부양의무 요건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완화되었으며,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개편됨
- 부양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다음과 같음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5년부터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개념을 추가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소득개념을 통일성 있게 적용하고자 함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란 수급가구에 적용하는 소득평가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제외할 수 있는 항목들의 금액을 차감한 값이고, 이를 토대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부양비를 산정함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차감제외항목¹¹⁾

- 2015년에는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 값, 즉 부양의무자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한 선정

11)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차감·제외할 항목 적용대상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공적이전소득 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교육·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임

기준 값을 바꿈으로써 부양의무 요건을 완화함

○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 값은 <그림 II- 3>에서 <그림 II- 4>로 변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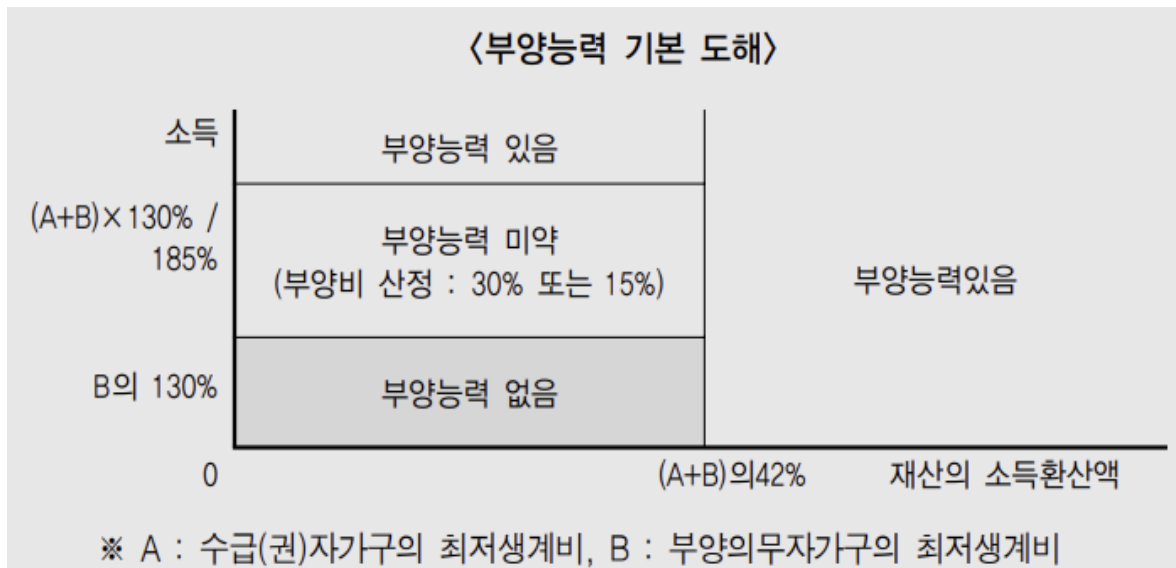
○ 2014년까지 부양능력을 구분하는 소득기준

-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 130%(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양의무자의 경우 185%)’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이었으며,
- 재산기준은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 42%’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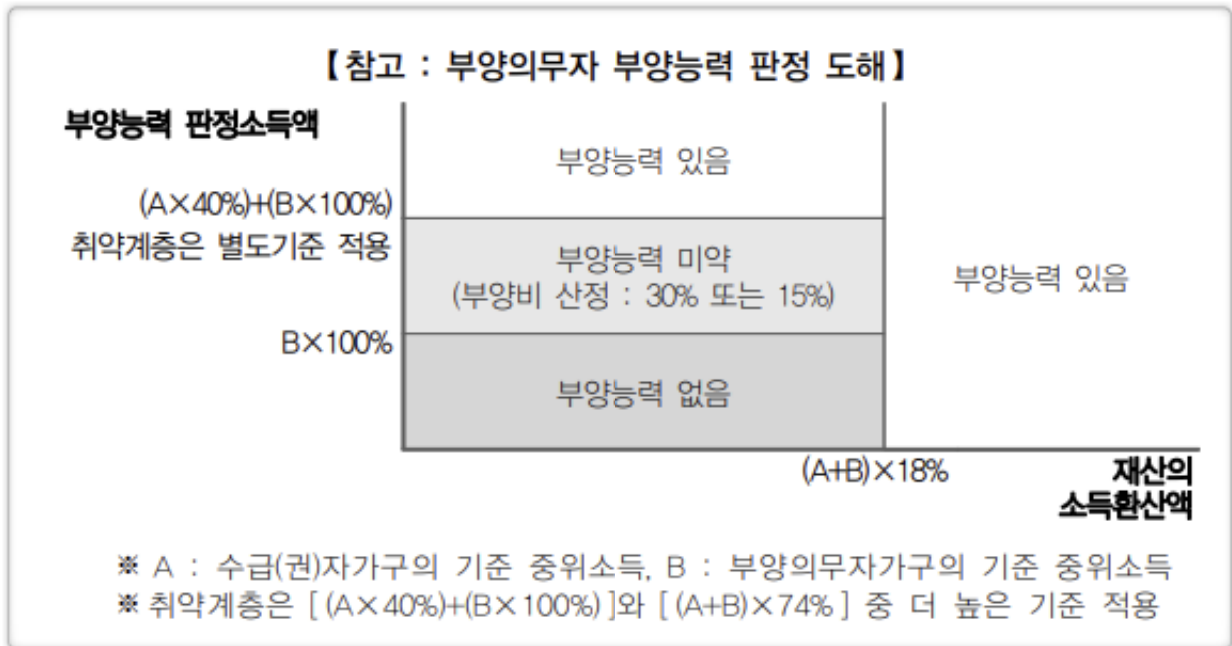
○ 2015년부터 부양능력을 구분하는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와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이었으며,
-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 18%’이었음

<그림 II- 3> 2015 이전 부양능력 판정 도해



<그림 II - 4> 2015 이후 부양능력 판정 도해



- 2017년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만족하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함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를 추가함

- 2018년 10월부터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 따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 그동안 실제 부양 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부양능력)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비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기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현실적 부양 곤란 등이 중요한 문제였음
 - 이에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부양의무자 요건 규정을 변경 및 삭제함

(3) 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주요 변화

- (기본재산액 체계 변화) <표 II-16>에는 급지별 기본재산공제액의 변화를 정리하였는데, 이를 보면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기존 3급지 체계에서 4급지 체계로 크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2년까지 기본재산액 산정기준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함
 - 이에 따라 아래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재산액도 급지별로 차등으로 두어 변경함

<표 II-16> 급지별 기본재산액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Panel. A.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2010~2019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2020~2022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Panel. B.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2023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주: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포함), 특별시/ 중소도시: 도의 “시” 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도의 “군”

- 그밖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음
 - (금융재산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금융재산 기본재산액 중 생활준비금은 2015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화함
 -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변화)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반·금융재산, 승용차(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2020년에 월 4.17%에서 2.08%로 변화함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 2021년 1월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하여, 분리가구의 보장성을 확대함

제3장. 선행연구 고찰

1. 주거급여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주거급여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으로 인한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주거취약계층 지원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수의 연구들이 주거급여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주거비 부담완화 정책이 빈곤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 부족한 수준임을 강조함
 - 김문길·김태완(2020)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이후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각각 1.0%p, 6.6%p 증가한 것을 통해 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진미운(2016)은 저소득층 가구의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RIR)’이 평균 RIR 보다 높다는 점을 통해 이전 주거급여 지원 모델이 포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함
 - 특히 임차급여 산정방식에 활용되는 자기부담률(K)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과부담 가구가 절반가량에 이른다는 점에서 30%에서 20%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이길제(2022)는 주거급여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양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상대적으로 빈곤선까지 확대하고, 임차급여의 자기부담률도 30%보다 낮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국토연구원(2019)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처분소득의 약 20% 이상,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부담비용이 가처분소득의 약 10%라는 점에서 이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최근에 나타난 주거급여의 제도 개편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을 수급가구의 양적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및 폐지가 필수적임을 보이고 있음
 - 진미윤(2016)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국토연구원(2017)은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에 해당하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400가구를 대상으로 계량 분석한 결과,
 -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 신청 탈락한 가구의 비율이 높으나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비율은 낮고, 경제 및 주거 상황이 열악함을 보임
 - 이길제(2022)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부양가능성만을 전제로 수급가구에서 제외되었던 비수급 빈곤층을 새롭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힘
 - 국토교통부(2018)은 표적집단면접(FGI), 통계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명목상 재산 이전 및 세대분리 시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보임
- 홍인옥(2004), 진미윤(2016), 국토연구원(2017,2019)는 주거급여 중 자가가구에게 지급되는 수선유지급여(전 현물급여)를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홍인옥(2004)은 비닐하우스촌과 쪽방지역, 지하처럼 비정상적인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실태를 소개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함
 - 장기적으로 비닐하우스촌을 없애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이동식 공동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쪽방의 경우 쪽방상담소의 역할이 중요하고, 찾아가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지하 주거의 경우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지하거주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함
 - 진미윤(2016)은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나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연계된 새로운 접목이 필요함을 주장함
 - 국토연구원(2017)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공사비 시세에 맞게 지원 한도

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임

- 국토연구원(2019)은 주택개량사업을 통합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것, 매입임대주택의 전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사원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것, 스프링쿨러 설치와 노후 쪽방 주택 개조 사업을 통해 비주택거주가구를 지원할 것을 주장함

□ 이태진·우선희·최준영(2017), 하성규(2021), 이길제(2022) 등 다양한 연구들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시행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 이태진·우선희·최준영(2017)은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가주택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반면, 소득이나 지출에 비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함
- 이길제(2022)는 부모가 수급가구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주거급여에서 동일 보장가구의 연령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을 보임
- 하성규(2021)는 일본과 서구에서 널리 보급된 셰어 하우스, 영국에서 시행되는 독신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등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한국 청년들이 처한 주거빈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 밖에 국토연구원(2014), 진미윤(2016), 진미윤·서동훈(2018) 등은 증가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맞추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전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토연구원(2014)은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급여 전달체계 구축, 부적절 급여 및 임대주택 시장의 왜곡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제안함
- 진미윤(2016)은 주거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서 주민센터와 주거급여 사무소, 주거복지센터, 마이홈 상담센터의 협력과 상호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을 제안함
- 진미윤·서동훈(2018)은 LH의 주택조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자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전문 직종제를 도입하여 조사 수행체계를 효율화·전문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 －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수급자의 상향 주거이동이나 자산 형성과 같은 삶의 질 제고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상 주거급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주거급여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주거급여의 재정소요를 추정하고 이를 전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해당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추계방법론 선행연구 검토

- 주거급여의 수급가구나 재정소요를 전망하는 연구가 없어 사실상 주거급여에 대한 추계방법론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본 절에서는 다양한 추계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는 세수입과 기금의 전망모형에 대한 분석방법론을 검토함
 - 참고할 만한 주거급여 재정소요 전망에 관한 문헌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입 및 기금수입 전망모형을 참고하는 것이 모형구축에 의미 있다고 판단됨

가. 해외문헌

- 아래에는 주요국의 세수 전망모형을 추정한 해외문헌들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을 제시함
- (지방세) 지방세 추계에 관한 해외문헌은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접근방법인 시계열을 이용한 모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Downs and Roche(1983)는 산디아고(San Diego)와 피츠버그(Pittsburgh) 데이터를 이용하여 ARMA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재산세, 판매세 (sales tax) 및 정부간 이전 (intergovernmental transfer)과 정부지출 간의 관계를 살펴봄
 - － 분석결과, 재산세 수입의 증가는 정부지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판매세 등의 다른 세수를 감소시키며, 재산세의 감소는 산디아고 이외 지역의 세입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Sexton, T(1987)의 경우 지방세 세입 예측에 있어 전문가적 판단에 의한 판단(judgemental) 방식에 의존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시계열 방법론을 제시함
 - － Sexton, T(1987)는 미네소타(Minnesota)주의 재산세 전망모형을 구축하면서, 모형 적합성을 분석하였으며, ARIMA 모형이 세입에 적합하다고 주장함
 - Fullerton(1989)은 미국 아이다호(Idaho)주 판매세 자료와 다양한 시계열 모형의 비교를 통

해 ARIMA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임

- Shkurit(1990)는 오하이오 주(Ohio State)의 차량판매세, 비차량판매세, 기업면허세, 공공시설세 등의 다양한 지방세 수입 항목을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 및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추정
 - 차량판매세, 비차량판매세, 기업면허세, 공공시설세 중 공공시설세의 경우 시계열 분석이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Duncan et al(1993)은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의 앨러게니 카운티(Allegheny County)의 교육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세 세수를 추정한 결과, 여러 시계열 방법론 가운데 C-MSKF이 가장 우수한 전망력을 보임
 - C-MSKF: 횡단조정 다중상태 칼만필터(cross-sectional multi-state Kalman filter: C-MSKF)의 약자로서 베이지안(Bayesian) 예측 방법 중 하나임
 - 연구에 따르면, C-MSKF기법이 일반 다중상태 칼만필터보다 시계열의 추세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민감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Cirincione et al(1999)은 코네티컷(Connecticut) 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세외수입 전망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지수평활법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함
 - 기존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계절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동평균, 지수평활법, 등 다양한 계절조정 방법을 시험하였으며, 여러 모형들 중 지수평활법이 가장 좋은 예측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Rich et al(2005)은 뉴욕을 대상으로 자기회귀모형(AR)을 비롯한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전망모형을 구축함
 - 판매세와 원천징수의 세원 예측에 경기동행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다변량 모형을 지방세 예측에 사용하는 것이 전망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됨

□ (국세) 국세 수입 전망모형을 다룬 해외 연구들 역시 시계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국세 수입 추정모형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음

- Makananisa(2015)는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n)의 국세 항목별 예측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세입의 항목에 따라 전망모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예측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ARIMA, Holt-Winters 모형)와 법인세, 총세입

- (Holt-Winters 모형) 등 항목별로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모형이 서로 상이함을 보임
- Chimilila(2017)는 탄자니아(Tanzania)의 국제 수입을 예측하였으며, 세입 예측은 ARMA 방법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Streimikiene et al(2018)은 파키스탄(Pakistan)의 국제 항목별 전망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변량 및 단변량 시계열 모형의 전망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변량 시계열 모형인 ARIMA의 예측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동 연구에서는 다변량 모형 구축을 위한 결정변수로 유가 및 소비자물가지수 (CPI) 등을 활용한 바 있음

<표 III-1> 해외 선행연구 정리

	분석대상	분석자료	분석모형	분석결과
Chimilila (2017)	• 탄자니아(Tanzania)	• 세수	• ARMA • GARCH	• 세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변동성이 영구적으로 나타남 •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것을 권고
Cirincione et al. (1999)	• 코네티컷(Connecticut) 주의 6개 기초지방 정부	• 지방 일반 세외수입	• Naive Model • 이동평균법 • 지수평활법 • ARIMA, • 정규방정식	• 월별 또는 분기별 보다 격월자료가 예측력의 정확도가 높음 • 지수 평활법으로 추정 시 예측범위의 오차가 적음
Duncan et al. (1993)	• Pennsylvania 주 Allegheny 카운티의 40개 교육구	• 소득세	• 다중상태 칼만필터(MSKF) • 횡단조정 다중상태 칼만필터(C-MSKF)	• C-MSKF가 MSKF보다 예측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Downs and Roche (1983)	• 산디아고(San Diego) • 피츠버그(Pittsburgh)	• 재산세	• 다변량 ARMA	• 재산세의 증가는 다른 세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재산세의 감소는 다른 지역의 세입이나 수수료의 인상을 유도
Fullerton (1989)	• 아이다호(Idaho) 주	• 판매세	• ARIMA	• ARIMA 모형이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대상	분석자료	분석모형	분석결과
Glickman (1971)	Philadelphia SMSA (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 OLS 2SLS - LISE	2SLS추정방법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MAPE가 낮기 때문에 일관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음
Makananisa (2015)	South Africa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총세수	- ARIMA/SARIMA, - Holt-Winters model	- 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는 분석모형과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가 나옴 - 법인세·총세수는 Holt-Winters모형이 더 정확성이 높음
Rich et al (2005)	뉴욕(New York)	- 세수 (판매세, 원천징수세 과세표준 고려)	단변량 자기회귀모형	지역별 동행지수를 사용하면 세수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
Williams et al (2016)	미국 14개 주의 18개 지방정부	- 재산세 - 판매세 - 일반기금 - 그 외	- 이동평균법 - 지수평활법	지수평활법이 시간의 변동성을 잘 반영하며, 가장 예측력이 높음
SEXTON (1987)	미네소타(Minnesota)	재산세	- traditional income elasticity methods - structural econometric model - ARIMA	ARIMA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정확성이 높음
Shkurit (1990)	오하이오(Ohio) 주	- 개인소득세 - 비차량판매세 - 기업면허세 - 차량판매세 - 공공시설세	- 시뮬레이션 모델 - 회귀분석 - ARIMA - VAR	- 실무자가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 - 장기적인 시계열 모형을 구현할 필요
Streimikiene et al (2018)	파키스탄(Pakistan)	- 직접세 - 판매세 - 연방소비세 - 관세	- AR - ARIMA - VAR	ARIMA가 다른 방법론에 비해 오차가 작음

주: 홍우형·김원기 (2022) pp. 10-11 <표 II-1> 재인용

나. 국내문헌

- 국내문헌에서도 주거급여와 같은 정부 개별 사업의 재정소요를 전망하는 추정모형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움
- 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세입의 정확한 전망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내에도 다양한 세입전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
- (지방세) 대부분의 연구에서 서로 다른 세목이 가지는 고유성 및 세목별 세제개편 효과를 정확하게 고려하기 위해 각 세부 세목별로 서로 다른 결정변수 및 서로 다른 형태의 함수를 사용하였음
 - 이영화·조기현(1998)은 1998년과 1999년의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예측치를 시계열 주기별로 구분하여 (연간, 분기 및 월별) 전망치를 추정함
 - －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과 표면상무관회귀모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이 좋은 예측력을 보였으며 특히 연간모형이 높은 예측력을 보임
 - 이현선·박태규(2007)는 13개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지수평활모형을 포함한 다양한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의 해당 세목의 세수를 전망함
 - 조택희(2005)는 충청북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2005년 전망치를 다양한 모형 (추정선형 대수모형, Holt-Winters의 기법모형, ARIMA모형 등)을 이용해 전망함
 - － 세목별로 가장 좋은 예측력을 보이는 모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세목별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전망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성명재·박노옥(2003)은 OLS를 이용해 세목별로 상이한 결정변수와 함수형태를 가정하여 전망모형을 추정함
 - － 개별세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수추계를 할 때는 세목별 세수함수 분석이 효과적임을 밝힘
 - 이기환(2019)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계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전국 지방세수 데이터를 패널로 구성하여 지방세를 추정함
 - － 다양한 패널모형(정태 및 동태패널모형)을 비교하여 예측력을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함

- 또한, 지역별 결정변수의 이질성이 지역별 세수 차이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며, 결정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예측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임
 - 이석환(2016)은 시계열분석과 일반회귀분석의 예측력을 비교하였으며, 서울시의 지방세 전망결과, 시계열분석이 회귀분석보다 일관성 있게 낮은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함
 - 김현아·박철(2011)은 ARIMA, VAR, 탄성치모형을 사용하여 서울시의 지방세를 세목별로 추정함
 - ARIMA(0,1,1) 모형 및 VAR(1) 모형의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은정·이영환(2008)은 주요 선행연구의 지방세 세수 추계 이론적 모형을 비교함
 - 진도비모형의 장점과 거시계량모형이나 회귀분석, 시계열분석을 보완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국세) 국세를 추계한 기존 국내문헌에서는 세수 항목별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이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대체로 시계열모형에 바탕한 전망모형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태석(2015)은 ARIMA, 벡터자기회귀모형(VAR), 오차수정모형(ECM), 혼합모형 등 다양한 모형을 이용하여 8개 국세항목의 전망모형을 구축함
 - 항목별로 우수한 예측력을 보인 모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세수입은 구간 회귀모형과 지수평활모형이, 법인세수입의 경우 VAR 및 오차수정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2011)는 회귀분석 및 ECM을 이용해 13개의 국세 세목을 28개로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전망모형을 구축함
 - 회귀분석모형에서 설명변수들을 다양하게 검정하였으며, 세분화된 세수예측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정책에 유용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함
-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을 추계하고 전망한 연구는 홍우형(2020)이 유일하며, 동 연구는 국세외수입의 항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여 전망모형을 구축함
- 국세외수입의 항목은 수입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형 구축이 어려움
 - 이에 홍우형(2020)은 국세외수입 항목이 시계열 특성을 보임에 착안하며, 해당 항목별로 맞춤형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여 전망모형을 구축함

- (기금수입) 기금수입을 전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입원과 구조모형을 설계하기 용이한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에 대해 Micro Simulation을 적용하여 전망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태석·최용옥·김도형(2016)은 재정추계모형으로 인원추계모형과 재무추계모형을 이용하여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재정효과를 분석하고, 민감도분석과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전망 분석을 통해 장기재정전망의 안정성 및 추가적 연금재정 위험요소를 추정함
 - 재정시물레이션을 따르면 공무원연금개혁이 연금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연금재정상태를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됨
 - 민감도 분석 결과 퇴직연금 선택률과 보수상승률이 전망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함
 - 박무환(2012)은 연금수리모형을 이용해 국민연금재정의 경제성장률, 실질임금, 실질금리,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들로 3가지 시나리오별 장기 전망 시물레이션을 실행함
 - 자본스톡 및 노동력 크기 감소 가정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이와 연계된 이자율은 시나리오에 비례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노동 한계생산성의 함수인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시나리오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고함
 -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자본축적 및 노동공급의 GDP 성장 기여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GDP 증가율 기여도 구성비는 2040년대 이후 GDP 증가율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
 - 박형수·전병목(2009)은 성별·연령별·인구추계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성기금에 대한 구조모형을 설계하고 Micro simulation을 통해 수입을 전망함
 - 사회보장성기금(건강, 고용, 산재 등)은 2050년 기준 추정결과 대부분 적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박정수(2020)는 기금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정성 기금, 금융성 기금을 포함하여 비음제약을 완화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함
 - 비음제약의 완화는 기금의 효율성에 양과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단순 CCR 모형의 경우는 비음제약을 완화한 SORM모형에 비해 효율성이 약간 더 높게 측정됨
 - 시계열분석 결과 위탁운영 중인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금수입 전망과 관련하여 최근 홍우형·김원기(2022)은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여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기금 수입에 대한 전망모형을 구축함

○ 개별 기금의 주요 수입원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활용하여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고 개별 기금 수입에 대한 전망모형을 구축함

－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주요 수입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수입원에 대한 정보를 주요 결정요인으로 활용하여 기금 수입의 정확성을 제고함

<표 III-2> 국내 선행연구 정리

	분석대상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이영희·조기현 (1998)	광역지방정부의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1998년과 1999년의 예측치를 추정	- 연간모형은 OLS, SUR - 분기모형은 ARIMA - 월별모형은 지수평활법	- 연간모형은 대체로 만족스런 결과를 보였으나 분기·월별모형의 결과는 기대수준에 미달 - 단순한 시계열모형에 의한 예측작업만이 이루어짐
이현선·박태규 (2007)	지방세 중 13개 세목	1987~2003년까지의 지방세정연감과 지방세징수액 결산자료	- 최소MAPE모형 - 지수평활모형 - 제시모형	정부의 재정제도운용 및 정책수립을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수평활모형
조택희 (2005)	충청북도의 취득세와 등록세	1985~2003년까지의 지방세정연감 자료	- 선형대수모형 - PDL모형 - Holt-Winters의 가법모형, 승법모형 - ARIMA모형	- 취득세의 경우 PDL모형이 예측력이 가장 우수 - 등록세의 경우 선형대수모형이 예측력이 가장 우수
성명재·박노옥 (2003)	지방세	지가총액 및 평균지가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연구소의 1965~2003년 자료	- OLS - Cochrane-Orcutt	- 개별세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수를 추계하고자 할 때는 세목별 세수함수 분석이 우수 - 개략적인 세수추이만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세수총계에 대한 세수함수 분석이 신속하다는 장점
여은정·이영환 (2008)	지방세		주요 선행연구의 지방세 추계방식 평가 및 비교	진도비모형의 장점을 계속 활용하되 거시계량모형이나 회귀분석, 시계열분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분석대상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이기환 (2019)	• 지방세	• 2011~2017년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	• 정태패널모형과 동태패널모형을 비교 후 RMSE 기준으로 적합한 모형 선택	• 지역별 설명변수의 차이가 각 지역별 세수의 차이로 나타남
이석환 (2016)	• 서울시의 지방세 중 8개 세목	• 1980~2015년의 지방세정연감 자료	• 시계열분석 • OLS	• 시계열분석의 세수 추계에 비해 회귀분석의 세수 추계가 일관성 있게 낮음
김현아·박철 (2001)	• 자치구세를 제외한 서울시의 지방세	• 1972~1999년의 서울통계연보 자료	• ARIMA • VAR • 탄성치모형	•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 시, ARIMA와 VAR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고영선 (2000)	• 국세 중 7개 세목	• 1980~1997년의 자료	• 단순 ECM • SUR-ECM • 탄성치모형	• 단순한 탄성치에 의존하는 방식은 복잡한 회귀식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결코 열위에 있지 않음
국회에 산정책 처 (2011)	• 국세 중 13개 세목을 전체 28개로 세분화	• 2001~2009년의 국세통계연보 자료	• 단순회귀모형 • ECM	• 새로운 설명변수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각 세목의 세수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예측
이태석 (2015)	• 국세 중 8개 세목	• 1980~2014년의 기획재정부 결산보고서 자료	• ARIMA • CS • ES • PR • VAR • ECM • Comb	• 각 세목 세수전망에 가장 효과적인 예측모형은 상이하게 나타남
홍우형 (2020)	• 국세외수입	• 2005~2019년 결산자료	• ARIMA • VAR • VECM	•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국세외수입 항목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전망모형 개발
이태석·최용욱·김도형 (2016)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공단의 2015년 공무원연금 통계	• Micro Simulation 분석 • 민감도 분석 • 시나리오 분석	• 퇴직연금 선택률과 보수상승률이 장기재정 전망결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
박무환 (2012)	• 국민연금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Micro Simulation 분석 • 민감도 분석 • 시나리오 분석	• 이자율은 시나리오와 비례적인 감소추세,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시나리오에 반비례
박형수·전병목 (2009)	• 사회복지 정책	• 거시경제변수 추계결과 (통계청)	• Micro Simulation 분석 • 민감도 분석 • 시나리오 분석	• 2050년 재정수지 추계결과 건강, 산재, 공무원, 군인연금은 증가하지만 고용의 경우 감소 이후 균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

	분석대상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박정수 (2020)	기금의 시계열 효율성	기금별 결산 자료 및 결산 재무제표	- 자료포락분석 - CCR, SORM 모형 - 시계열 분석 - OLS 모형	- 단순 CCR모형의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한 SORM모형에 비해 효율성이 더 높게 측정됨 - 시계열분석 결과 위탁운영 중인 기금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
홍우형·김원기 (2022)	기금	2010~2020년 결산자료	- ARIMA - VAR - VECM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전망모형 개발

주: 홍우형·김원기 (2022) pp.15-17 <표 II- 2>의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수정

다. 기존 추계방법론의 주거급여 전망모형 적용 가능성 검토

- (주거급여 전망모형 설계의 문제) 주거급여제도는 정책수요에 따라 빈번하게 개편되는 특성이 있어, 제도변화를 모형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추정모형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추계모형의 한계) 주로 시계열 모형을 사용하는 기존 추계모형들을 주거급여 전망모형에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함
 - 기존의 추계모형들은 제도변화를 모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더미변수 등으로 간접적으로 제도변화의 효과를 통제하기 때문에 모형을 통해 제도변화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추정오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기존의 추계모형은 제도변화 이전의 자료들만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기 때문에 향후 급격한 제도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이같은 제도변화를 반영한 주거급여 재정소요의 예측치를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주거급여의 전망모형을 설계할 때는 시시각각 변하는 주거급여 제도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추계방법론을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미시 시뮬레이션과 시계열 모형을 결합한 전망 모형을 고안하여,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제4장. 주거급여 전망모형 설계

1. 전망모형 개괄

-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시계열 모형을 결합하여, 주거급여의 제도 변화를 반영하면서 주거급여 재정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맞춤형 전망모형을 제안함
 - 즉, 미시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제도변화를 반영하고,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여 향후 예측치를 제시하여, 두 방법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망모형을 구현함
-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 그 중 임차급여 수급가구수와 재정소요를 추정하여 전망하는 데 집중함
 -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가구 분리지급의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 중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이 달라 수급가구수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추정 대상에서 배제함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또한 주거급여 수급대상가구 중 청년분리가구를 자료를 통해 식별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추정에서 배제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차급여 수급가구수만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소요액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함
 - － 다행히 주거급여는 임차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거급여 재정소요액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질적으로 본 연구의 주거급여 전망모형은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전망모형임
-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거급여 전망모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설계함
 - 1단계: 미시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연도의 제도 현실을 반영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추정
 - 2단계: 실측 자료를 사용하여 미시시뮬레이션을 추정치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가중치를 도출
 - 3단계: 현행 (혹은 미래) 제도변화를 과거에 적용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과거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역산하여 추정

- 4단계: 3단계의 추정결과에 2단계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본의 추정오차를 보정
- 5단계: 4단계에서 추정한 추정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시계열 전망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와 재정소요에 대한 예측치를 전망

□ (1단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연도의 주거급여 제도를 반영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임차급여 수급가구수를 추정함

- 예를 들어,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년 자료를 사용하여 2014년 주거급여제도를 적용하였을 때 표본자료를 통해 나타난 수급가구수를 추정함
- 각 연도별로 해당연도 주거급여 제도 현황을 적용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지역별(시도별)로 추정함

□ (2단계) 1단계에 추정한 추정치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과거 실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활용하여 추정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가중치를 도출

- 1단계에서 추정한 추정치는 표본자료를 활용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정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한편, 1단계의 추정치는 과거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실제 수급가구수에 대한 통계를 사용하여 추정오차를 보정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표본의 추정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고안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 예컨대, 1단계에서 추정한 2014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치를 $\hat{X}_{2014}$ 라고 하고, 실제 2014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규모가 $\tilde{X}_{2014}$ 라고 하면,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도출

$$- \text{ } wgt_{2014} = \frac{\tilde{X}_{2014}}{\hat{X}_{2014}}$$

- 이를 연도별·지역별로 계산하여 추정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가중치를 도출함

□ (3단계) 2단계와 동일하게 미시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되, 해당연도의 주거급여제도가 아니라 현행 (혹은 미래) 제도변화가 반영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추정함

- 해당연도의 제도가 아닌 현행 (혹은 미래) 제도를 적용하여, 현행(혹은 미래)의 제도를 과거에 적용하였다면 그 결과로 발생하였을 가상적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추정함
 - － 경제학에서는 이를 counterfactual이라 부름
 -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도변화를 반영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대한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음
- (4단계) 3단계에서 추정한 연도별·지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결과에 2단계에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본추정의 추정오차를 보정한 추정치를 도출
- 3단계에서 추정한 추정결과도 여전히 표본을 활용한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오차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실측치와 추정치의 비율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오차를 보정함
- (5단계) 4단계에서 입수한 연도별 추정치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시계열 모형을 활용한 주거급여 전망모형 설계하고 구축함

2. 주거급여 전망모형 설계

가. 1단계: 주거급여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

- 먼저, 1단계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각 년도의 주거급여 수급요건을 반영한 수급가구수를 추정함
- 주거급여 제도의 수급 요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2년 ~ 2014년)와 국토부의 주거급여 사업 안내(2015년 ~ 2023년)를 참고함
 - － 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체계(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2015년부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됨
 - － 주거급여의 담당 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됨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년 ~ 2022년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수급요건 변화를 반영한 수급가구수를 추정함
 -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을 파악하여 가구의 재무건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전국의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지급액 선정기준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미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할 수 있음

□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지 않음

- 2015년 이전은 주거급여 통합체계, 이후는 주거급여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됨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 이하이면 주거급여 자격이 주어짐
 - 최저생계비가 기준이었으며, 2015년부터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수급가구 자격이 주어짐
 - 43% (2015년 ~2018년), 44% (2019년), 45% (2020년 ~ 2021년), 46% (2022년), 47% (2023년)으로 기준이 완화됐음
 - <표 IV-1>은 가구 규모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기준을 나타냄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혹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
 - 2019년 제1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 가계금융복지조사 DB에서 가구 내 수급권자를 파악할 수 없고, 1인 가구 외에는 부양의무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산출) 미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은 주거급여 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가용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여 산출함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 합으로 구성되며, 가구의 소득 및 자산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추정함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1)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2) 근로소득공제 비용, 3) 그 외 추가 지출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됨

<표 IV-1> 가구 규모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999년		310,000	520,000	720,000	900,000	1,020,000	1,160,000	1,300,000
2000년		320,000	540,000	740,000	930,000	1,060,000	1,200,000	1,340,000
2001년		330,000	550,000	760,000	960,000	1,090,000	1,230,000	1,370,000
2002년		350,000	570,000	790,000	990,000	1,130,000	1,270,000	1,410,000
2003년		360,000	590,000	810,000	1,020,000	1,160,000	1,310,000	1,460,000
2004년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1,507,723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1,652,682
2006년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1,731,522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1,813,848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1,936,494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62,877
2010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119,607
2011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1
2013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2015년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43%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13,733	2,987,113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2015년 이전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15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X% 이하인 자를 수급권자로 봄. 2015년 이후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기준은 총 4차례에 걸쳐 완화됨

* X: 43%(2015~2018)→ 44%(2019)→ 45%(~2021)→ 46%(2022)→ 47%(2023)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실제소득) 근로, 사업, 재산, 사적·공적 이전소득과 부양비 및 보장기관 확인 소득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근로·사업·재산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명확히 구분됨
- (사적이전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과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구분하여 실제소득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만 포함되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구분할 수 없어 사적이전소득은 실제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중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소득은 제외됨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016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실제소득에 반영함
 - － (양육수당)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보육시설이용 확인이 불가능함
-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함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실제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근로소득공제) 수급가구 내 가구원 유형에 따라 공제방법 및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적용함

- 2011년, 2012년에 자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과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을 공제하였으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 <표 IV-2>는 가구원 유형별 공제 방법 및 공제율을 나타냄
 - － 여러 공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장 유리한 공제를 적용함
 -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임신 및 분만 여부, 사회복지무요원이나 상근 여부, 북한이탈주민 여부, 행정 인턴 근무 여부를 구분할 수 없음
 - －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만 65세 ~ 74세 노인, 7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 가구 특성만 공제액 계산에 반영함

<표 IV-2> 수급 가구 내 가구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연도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12~2019	50%
		2020~2023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50%
만 65세 이상 노인	근로·사업소득	2013~2014	30%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사업소득	2015~2017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2018~2023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15~2023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2012	30%
		2013~2017	3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2018~2023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만 65세~74세 노인, 임산부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2015~2023	30%
75세 이상 노인	근로·사업소득	2013~2018	30%
		2019~2023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등록장애인	근로·사업소득	2012~2018	30%
		2019~2023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13~2019	30%
		2020~2023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행정 인턴	근로소득	2012~2019	10%
		2020~2023	30%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수급 가구 내 가구원의 유형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이나 일부지출을 가구특성지출로 간주하여 공제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
- <표 IV-3>은 가구특성지출 공제 대상을 나타냄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장애수당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외는 가구특성지출로 반영하지 않음

<표 IV-3> 가구특성지출 공제 대상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소득공제 포함여부	
			가구특성 지출공제	가금복 DB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
참전명예수당		○	△	×
기초연금		○	×	-
장애수당	장애수당	○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	×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
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	×	×
	공무원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	×	×
실업급여		○	×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	×
진폐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 등	○	×	×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진폐위로금		○	×	×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연금, 장애연금, 간호수당	○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	×	×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소득공제 포함여부	
			가구특성 지출공제	가금복 DB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o	o	x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o	x	x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o	x	x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o	o	x
지자체 지원	이·통장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o	x	x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x	x	x
	조례 비(非)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o	x	x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o	o	x
	간병비	o	o	x
	특수식이구입비	o	o	x
만성질환 등의 3개월 이상 의료비		x	o	x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 (75%)		x	o	x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축산 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논활용직접지불금, 기본직접지불금	o	o	x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x	o	x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중 이자비용 50%	x	o	x
대학생 등록금 지출		x	o	x
구직촉진수당		o	x	x

주: 가구특성지출 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가계금융복지조사 DB에서 구분할 수 있으면 o, 아니면 x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주거용·일반·금융재산) 가액에 기본재산액, 부채를 차감한 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로 다른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 <표 IV-4>, <표 IV-5>는 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소득환산율을 제시함
-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하며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액이 음수일 경우 0으로 간주함

<표 IV-4> 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 항목		산정 기준	가금복 DB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O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X
	가축, 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X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X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O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X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O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O

주: 가계금융복지조사 DB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거주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보정계수 0.95를 일괄 적용

<표 IV-5>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 (주거용 재산) 주택의 재산액 혹은 전세 보증금에서 거주 급지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환산액 산출함

- 가계금융복지조사 DB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거주지를 일괄적으로 주택으로 간주하여 보정계수 0.95를 일괄적으로 적용함
- 급지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존재하며, 한도액 이상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간주
 - 예를 들면, 2022년 기준 대도시 주거용 재산의 가격이 1억 3천만 원이면, 적용 재산 한도액 1억 2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은 일반재산으로 간주함
-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구분하여 한도를 적용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DB를 통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거주 주택 금액 변수를 이용함
- 수급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만을 인정하고, 부양의무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표 IV-6>은 급지별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을 나타냄

<표 IV-6> 급지별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Panel. A.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2012~2013	-	-	-	-
2014~2019	10,000만원	6,800만원	3,800만원	-
2020~2022	12,000만원	9,000만원	5,200만원	-
Panel. B.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2023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일반재산) 토지, 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산출함
 - 가계금융복지조사 DB에서 가축, 종묘 등의 동산, 입목재산, 어업권 및 양식업권, 임차보증금(주택), 선박, 항공기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구 실물자산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 자동차 재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재산을 산출함
- (금융재산) 금융자산에서 생활준비금과 장기금융저축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을 산출함

- (생활준비금)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 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함 (2015년 이전 생활준비금은 300만 원)
 - (장기금융저축공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정기예금·적금·저축성 보험, 펀드 등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금액을 금융재산 산정에서 가구당 연간 한도 500만 원, 총한도 1,500만 원 공제함
 - 가계금융복지조사 DB에서 장기금융저축상품 가입 시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음
 - 금융재산 중 수급 가구의 거주지 전·월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 산출에 적용하였으므로 금융재산 산출에서 제외함
-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을 포함되며, 장애인가구 여부, 용도, 배기량, 차령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재산가액 감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됨
- (재산가액 산정 제외) 배기량과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영 불가함**
 - (재산가액 감면) 자동차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영 불가함**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배기량, 차종, 승차정원, 승합자동차세 납부여부, 전방조종자동차 여부, 적재적량, 장애인 정도, 차령, 질병이나 부상 여부, 폐차 및 매매 가능여부, 멸실 사실 인정서, 불법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영 불가함**
 -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위 세 항목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월 100% 소득환산율을 일괄 적용**
- (기본재산액)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함
- 기본재산액이 주거용 재산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일반재산에서 공제함
 - 2022년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기본재산액을 구분했음(<표 IV-7> 참조)
 - 대都市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가 포함되고, 중소都市는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가 포함되며, 농어촌의 경우 도의 “군”이 포함됨
 - 가계금융복지조사 DB 내 시·도 분류 변수는 시 단위까지만 구분되어 있으므로, 대도시 외 기본재산액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함
 - 조사연도 기준 2015년~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DB는 시·도분류 변수가 없고, 2018년~2022년 확인이 가능함

<표 IV-7> 급지별 기본재산액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Panel. A. 2010~2022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2010~2019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2020~2022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Panel. B. 2023~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2023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중 그 용도가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일 때만 부채로 인정함
- 기본재산공제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함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사채총액과 지출용도 중 의료비와 학비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채 총액을 소득환산액 산출에 활용함

<표 IV-8> 부채의 인정 범위

구분		인정범위
부채 출처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사채	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사채
	임대보증금	○
부채의 지출형태 제한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

□ <표 IV-9>에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과 소득인정액 산출 시 적용 가능 여부를 정리하여 제시함

<표 IV-9> 가계금융복지조사 DB의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 미보유 변수 현황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		가계금융복지조사 DB 보유 여부	비고
소득	근로소득	O	
	사업소득	O	
	재산소득	O	
	사적 이전소득	O	
	공적 이전소득	△	장애수당 외 구분 불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X	
재산	토지	O	
	주거용 재산	O	
	임차보증금	△	주택 여부 확인 불가
	선박, 항공기	△	선박만 확인 가능
	가축, 종묘 등의 동산	△	동식물만 확인 가능
	입목재산	△	동식물만 확인 가능
	각종 회원권	O	골프, 콘도 등 확인 가능
	어업권 및 양식업권	X	
	금융재산	O	
	자동차	O	

□ (1단계 주거급여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상기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과 해당 연도의 수급기준을 비교하며, 수급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수를 최종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표 IV-10>에 제시함

- 2018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아래의 표에는 소득인정액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수, 즉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수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함

- 아래의 추정된 결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추정된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치와는 상당한 추정오차가 발생함

<표 IV-10> 연도별 주거급여 제도를 반영한 추정 수급 가구 수

(단위: 가구 수)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2015	321,783	433,408	197,118	200,080	265,912	170,655
2016	313,892	411,270	216,155	217,677	263,602	170,310
2017	322,247	397,709	246,726	207,777	254,937	183,796
2018	300,564	352,329	238,566	200,953	266,680	177,246
2019	348,110	368,791	234,531	197,129	264,774	176,529
2020	402,902	426,952	269,486	189,727	280,692	175,663
2021	372,572	415,577	249,916	187,249	273,262	163,579
2022	380,565	469,637	252,762	185,006	274,828	175,675

나. 2단계: 가중치 도출

- 1단계에 추정한 수급가구 수와 과거 실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의 차이가 발생함
 - 추정한 추정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급가구를 지역별로 추정한 것임
 - 표본으로 사용된 자료는 완벽하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표하지는 못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과거 실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와 추정치와의 차이가 발생함
- 이와 같은 추정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실제 수급가구수와 추정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도출함
 - 연도별 지역별로 추정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hat{x}_{it}$ 라고 하고, 실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bar{x}_{it}$ 라고 함
 - 추정오차는 추정치 ($\hat{x}_{it}$)와 실제치 ($\bar{x}_{it}$)의 차이임
 - 추정치 ($\hat{x}_{it}$)와 실제치 ($\bar{x}_{it}$)의 비율을 가중치로 사용함
 - 예컨대, 1단계에서 추정한 2014년 서울지역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치를 $\hat{x}_{2014\text{서울}}$ 라고 하고, 실제 2014년 서울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bar{x}_{2014\text{서울}}$ 라고 하면,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도출

$$- \quad wgt_{2014 \text{ 서울}} = \frac{\tilde{X}_{2014 \text{ 서울}}}{\hat{X}_{2014 \text{ 서울}}}$$

- 연도별·권역별로 실제 수급가구 수와 추정치를 계산하여 연도별·권역별 가중치를 도출
 - (권역 구분) 2015년 ~ 2022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지역을 서울, 인천·경기, 동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으로 구분함.
 - 가구의 시도 정보는 2018년부터 존재하여 시계열의 연속성을 위해서 연도별·권역별로 추정한 가중치를 사용함

다. 3단계: 제도변화 반영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

-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정할 때처럼 연도별 제도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2023년의 주거급여 제도를 적용함
 - 해당연도 (2015년 ~2021년)의 제도 대신에 2023년의 주거급여 제도를 각 연도 표본에 적용하여 가상적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추정함
 -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도변화를 반영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와 재정소요에 대한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2023년 주거급여 제도를 반영한 추정치를 보고하고 있지만, 그 외 미래의 예상되는 변화를 감안하여 제도변화를 반영한 추정치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함
- 2023년 제도 중 다음의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에서 2023년까지의 가계금융조사 표본에 적용하여 3단계 추정치를 도출함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 이하이면 주거급여 자격이 주어짐
 - 2023년 중위소득의 47% 이하이면 수급가구 자격이 주어짐
 - (근로소득공제) 연도별 근로소득공제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표 IV-12>에 제시된 2023년 가구원 유형별 공제 방법 및 공제율을 적용함
 - (주거용 재산적용 한도액) 연도에 따라 급지별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 IV-13>에 제시된 2023년 급지별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을 적용함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공제액도 제도변화를 적용하여 <표 IV-14>에 제시한 2023년 급
지별 기본재산액을 적용함

<표 IV-11> 가구 규모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X% 이하인 자를 수급권자로 봄. X : 46%(2022)→ 47%(2023)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표 IV-12> 2022년 수급 가구 내 가구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20~2023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50%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사업소득	2018~2023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15~2023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2018~2023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만 65세~74세 노인, 임산부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2015~2023	30%
75세 이상 노인	근로·사업소득	2019~2023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등록장애인	근로·사업소득	2019~2023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20~2023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행정 인턴	근로소득	2020~2023	30%

<표 IV-13> 급지별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Panel. A.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2020~2022	12,000만원	9,000만원	5,200만원	-
Panel. B.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2023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표 IV-14> 급지별 기본재산액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Panel. A. 2020~2022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2020~2022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Panel. B. 2023~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2023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표 IV-15>에는 상기한 2023년 제도변화를 적용하여 추정한 수급가구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 역시 표본자료를 통한 시뮬레이션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수급자수와 상당한 추정오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15> 2023년 주거급여 제도를 반영한 연도별 추정 수급 가구 수

(단위: 가구 수)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2015	492,486	602,100	246,095	244,902	350,315	210,907
2016	514,907	566,709	261,073	252,936	352,399	215,350
2017	490,916	536,995	285,704	256,263	322,424	220,101
2018	451,772	519,063	276,037	233,529	320,560	209,578
2019	479,635	515,525	268,692	228,294	315,891	202,336
2020	504,746	548,245	294,677	211,228	310,195	197,349
2021	480,568	532,147	274,003	210,761	306,654	181,877
2022	485,737	620,890	277,696	207,660	308,014	191,683

라. 4단계: 가중치를 반영한 추정치 도출

- 4단계에서는 2023년 주거급여 제도를 적용한 추정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오차를 보정한 추정치를 도출함
 - 3단계(2023년 제도 적용)에서 추정한 추정치도 표본을 활용한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오차를 수반할 수밖에 없음
 - 이를 보정하기 위해 2단계에서 구했던 실제 수급가구 수와 추정치의 비율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함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광역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급가구수를 추정함
 - 예를 들면 서울지역 2023년 제도를 적용한 2015년 추정치를 $\hat{X}_{서울2015}^{2022}$ 라고 하자. 이 추정치도 추정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wgt_{2015} = \frac{\tilde{X}_{2015서울}}{\hat{X}_{2015서울}}$)를 곱하여 새로운 추정치를 얻음
- <표 IV-16>에는 2023년 제도를 적용한 수급가구수 추정치에 추정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가중치를 적용한 수급가구수 추정결과를 제시함
 - 아래의 수급자수 추정치는 2023년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 추정치이므로, 실제 수급가구수의 제도변화를 보정한 수급가구수로 고려할 수 있음
 - 이에 4단계 추정 수급가구수를 5단계의 전망모형 설계 시 분석자료로 활용함

<표 IV-16> 가중치 보정 추정 수급 가구 수

(단위: 가구 수)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2015	204,375	229,866	166,581	149,937	179,131	98,035
2016	225,305	226,935	146,577	126,898	170,590	92,425
2017	215,830	226,772	139,314	131,957	162,783	86,960
2018	248,034	300,525	155,622	139,418	179,431	99,466
2019	260,626	327,703	167,589	146,278	198,295	103,591
2020	281,669	352,569	177,822	153,707	210,978	114,481
2021	319,305	386,620	183,788	153,635	230,806	117,307
2022	329,095	419,555	191,698	159,222	243,655	120,074

마. 5단계: 시계열 전망모형 설계

-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단계로써 1~4단계를 통해서 제도변화를 반영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추정한 추정치를 활용하여,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대한 전망모형을 설계함
 - 1~4단계를 거쳐 추정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는 2023년(혹은 그 이후)의 주거급여 제도가 과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때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대한 추정치를 의미함
 - 이에 제도변화 적용 주거급여 추정가구수에 대한 추정치를 시계열 전망모형을 적용 시 분석자료로 활용하며,
 - 이를 통해 현행 제도변화까지 반영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대한 전망치를 도출하는 전망모형을 설계할 수 있음
- (5단계 전망모형 설계 로드맵) 구체적으로 5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시계열 전망모형을 설계함
 - STEP 1: LASSO 모형을 사용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통계적으로 선택함
 - － 최소 절대계수 축소변수 선택법(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LASSO)은 종속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통계적으로 선별하는 방법론임
 - － 본 고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전망하기 위한 결정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해당 분석방법론을 적용함
 - STEP 2: 단위근 검정(unit-root test)을 통해 시계열의 특성을 파악함
 - － 시계열이 불안정(I(1)) 시계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불안정 시계열의 경우에는 1계차분을 하여 전망모형의 변수로 활용함
 - STEP 3: STEP1에서 식별한 결정요인들을 활용하여, 시계열 변수들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전망모형을 추정함
 - － 안정 시계열의 경우, ARDL과 VAR 모형을 적용
 - － 불안정 시계열의 경우, 공적분 여부에 따라 공적분이 없는 경우에는 ARDL과 VAR을, 공적분이 있는 경우에는 ARDL과 VECM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하지만 본고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의 시계열이 8개년도로 매우 짧아 공적분 검정을 시행할 수 없어 실제로는 ARDL과 VAR 모형만을 사용함

□ (전망모형 선정) 최종적으로 전망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시계열 모형 중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예측오차(prediction error)에 근거하여 모형 적합도가 더욱 높은(즉, 예측오차가 적은) 모형을 전망모형으로 선정하며, 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예측력 지표로는 전통적인 모형 적합도에 대한 지표인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활용함
 - RMSE는 종속변수의 실제값(actual value)과 적합치(fitted value)의 차이를 의미하는 추정오차의 크기에 대한 추정치로, 그 값이 작을수록 예측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두 번째 예측력 지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의 실제값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1년, 2년, 3년 전망치와 실제값과의 차이로 도출된 시뮬레이션 오차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예측력이 더욱 높은 모형을 선정함
 - 편의상 본고에서는 이 예측력 지표를 PMSE(Pseudo Mean Square Error)라고 정의함
- 예를 들어, 3년 PMSE는 다음과 같이 산출
 - 먼저, 분석기간 중 최근 3년(2020~2022년)의 실제값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 기간을 제외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모형을 추정하고 최근 3년간의 예측치를 도출함
 - 3년 PMSE는 최근 3년을 제외하고 추정한 전망치(y_t^f , $t=2020, 2021, 2022$)와 실제 관측값(y_t , $t=2020, 2021, 2022$)의 차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함
 - 3년 $PMSE = \sqrt{\sum_{t=2020}^{2022} (y_t - y_t^f)^2}$
 - 이 또한 시뮬레이션 오차에 대한 지표이므로 PMSE의 값이 작을수록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RMSE와 PMSE를 기준으로 예측오차가 작은 모형을 전망모형으로 선정함

(1) 분석방법론 개괄

□ (LASSO 방법론) Tibshirani(1996)가 제시한 최소 절대계수 축소변수 선택법(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혹은 LASSO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다양한 설명변수 중 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식별하는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시계열 관측치가 매우 짧은 반면 설명 변수가 많을 때 사용하기에 적합함

□ LASSO가 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를 선정하고,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할 때, LASSO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λ 에 대해서 다음의 목적함수 (Objective Function)를 최소화하는 추정계수(α, β_j)를 찾는 방법임

$$\operatorname{argmin} \frac{1}{2N} \sum_i \left(y_i - \alpha - \sum_j \beta_j x_{ij} \right)^2 + \lambda \sum_j |\beta_j|$$

-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 첫째, 각각의 λ 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추정계수(α, β_j)가 있으며,
 - 둘째, 추정계수(β_j) 중 일부 혹은 전부는 0이 될 수 있으며(즉, 계수가 0인 설명변수는 탈락)
 - 셋째, λ 의 값이 증가할수록 계수값이 0이 아닌 설명변수(선정된 설명변수)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LASSO는 결국 λ 를 어떻게 선택(즉, 설명변수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한 요건을 갖춘 λ 를 최적의 해로 도출됨
- 기본적으로 최적의 λ 는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기준으로 선정되며, 본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함
 - 첫번째는 교차확인(cross-validation, CV) LASSO 방법이며, 이는 예측오차(out-of-sample prediction error)의 편차로 구성된 CV 함수를 최소화하는 λ 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다음은 조정 LASSO(Adaptive LASSO) 방법으로, 이는 일련의 CV LASSO를 추정하고 이 중 가장 모형적합도가 높은 모형의 λ 를 선택하는 방법임

□ 시계열 전망모형 설계에 사용하는 ARDL, VAR, VECM 모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ARDL 모형) 먼저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ion Lag model, ARDL)은 종속변수의 과거값만을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AR(1)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확장된 모형으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활용하여 추정함

$$○ y_t = \alpha + \beta y_{t-1} + X_t \gamma + \epsilon_t$$

– 여기서 X_t 는 LASSO의 모형을 통해 선정된 결정요인 변수들을 의미함

○ VAR과 VECM 모형과 달리 ARDL 모형은 전망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들에 대한 전망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AR(1)모형을 적용하여 독립변수들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하여 사용함

$$– X_t = \alpha + \beta X_{t-1} + \epsilon_t$$

□ (VAR 모형)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VAR)은 설명변수에 종속변수의 과거값과 설명변수의 현재값 및 과거값을 모두 포함하는 모형으로 자기회귀시차분포(AutoRegressive Distributional Lag model, ARDL)모형을 다변량으로 확장한 모형으로 볼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짧은 관측기간을 고려하여 시차가 1인 VAR(1) 모형을 적용함

○ VAR(1) 모형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begin{bmatrix} \Delta y_{1t} \\ \Delta y_{2t} \\ \Delta y_{3t} \\ \vdots \\ \Delta y_{pt} \end{bmatrix} = \begin{bmatrix} \beta_{11} & \beta_{12} & \beta_{13} & \cdots & \beta_{1p} \\ \beta_{21} & \beta_{22} & \beta_{23} & \cdots & \beta_{2p} \\ \beta_{31} & \beta_{32} & \beta_{33} & \cdots & \beta_{3p} \\ \vdots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beta_{p1} & \beta_{p2} & \beta_{p3} & \cdots & \beta_{pp} \end{bmatrix} \begin{bmatrix} \Delta y_{1t-1} \\ \Delta y_{2t-1} \\ \Delta y_{3t-1} \\ \vdots \\ \Delta y_{pt-1} \end{bmatrix} + \begin{bmatrix} e_{1t} \\ e_{2t} \\ e_{3t} \\ \vdots \\ e_{pt} \end{bmatrix} \Leftrightarrow \Delta Y_t = B \Delta Y_t + \epsilon_t$$

○ 이론적으로 VAR 모형은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a) 등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시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짧은 시계열로 인해 시차가 길수록 자유도가 하락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1개의 시차만을 허용함

□ (VECM 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은 시계열 변수들의 단기적인 조정과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으로, 마찬가지로 짧은 시계열의 문제로 인해 1개의 시차만을 허용한 VECM(1) 모형을 적용함

○ 벡터오차수정모형은 시계열 사이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있는 경우에, 균형으로부터의 일시적·단기적 이탈이 발생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장기균형관계로 회복한다는 개념

이 적용되고 있음

- 이러한 장기균형관계의 유무는 공적분 검정을 통해 확인 가능함

- 따라서 본고에서는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적분 유무를 확인하고, 공적분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VECM(1) 모델을 추정함

$$- \Delta Y_t = \alpha_0 + \alpha_1 Z_{t-1} + \sum_{k=1}^q \gamma_k \Delta Y_{t-k} + \epsilon_t$$

- $Y_t = \beta_0 + \beta_1 X_1 + Z_t$, Z_t 는 균형오차

- α_1 은 장기균형관계에서 이탈했을 때 균형점으로 회복되는 조정계수를 의미함

- VECM 모형도 VAR 모형과 마찬가지로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a) 등을 통해 적정 시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나, 짧은 시계열이라는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1개의 시차만을 허용함

제5장. 주거급여 전망모형 추정결과

1. 제도변화를 반영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결과

가.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결과

- 연도별 가중치 보정된 수급 가구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봤던 1단계에서 4단계의 과정과 실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자료가 필요함
 - 1단계에서 연도별 주거급여 제도를 반영한 수급 가구 수 추정
 - 2단계에서 연도별 수급 가구 수와 실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의 비율로 가중치를 도출
 - 3단계에서 23년도 주거 수급 제도를 바탕으로 연도별 수급 가구 수를 추정
 - 4단계에서 23년도 제도 반영 연도별 수급 가구 수 추정에 가중치를 보정하여 최종 수급 가구 수 추정
- <표 V-1>는 지역구분 없이 연도별 추정치와 가중치 보정 추정치를 보고함
 - 각 열은 23년도 주거 수급 제도를 적용한 추정치, 연도별 실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가중치, 가중치 적용 추정치를 보고함
 - 1열: 23년도 주거 수급 제도를 적용한 연도별 추정치
 - 2열: 연도별 실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 3열: 연도별 제도 반영 수급 가구 수 추정치와 실제 수급 가구 수의 비율 (가중치)
 - 4열: 23년도 제도 반영 연도별 추정치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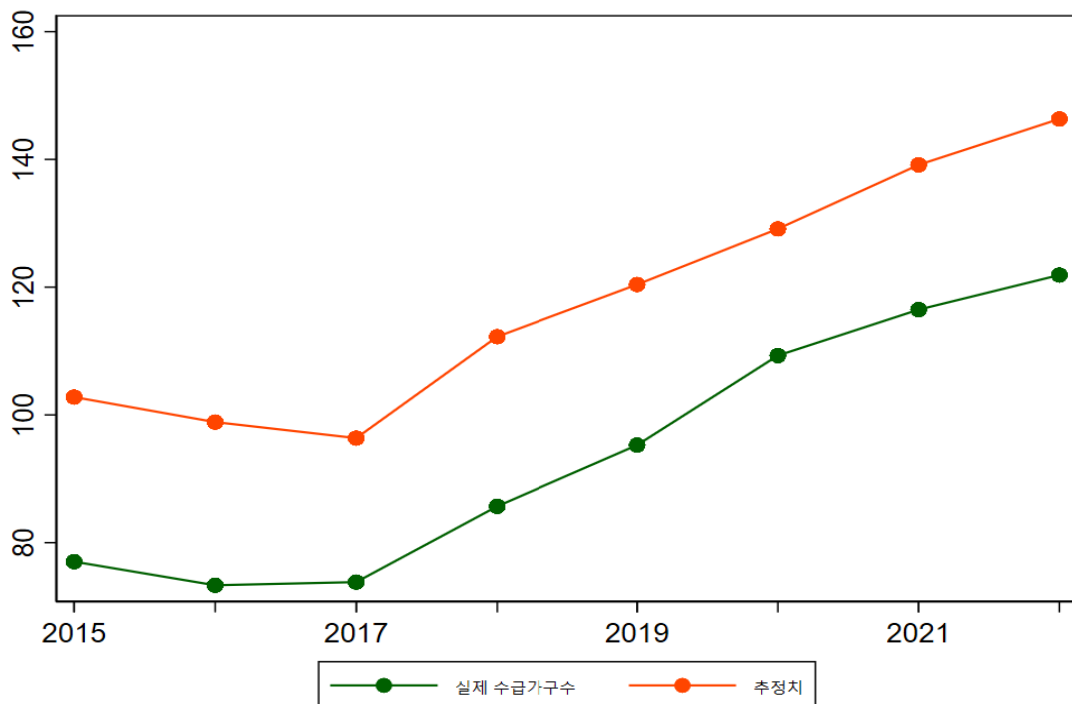
<표 V-1> 연도별 가중치 보정 수급가구수 추정

(단위: 가구)

구분	추정치	실제 수급 가구 수	가중치	가중치 보정 추정치
2015	1,588,959	0.4847	2,146,808	1,027,928
2016	1,592,910	0.4604	2,163,376	988,731
2017	1,613,195	0.4576	2,112,406	963,618
2018	1,536,341	0.5577	2,010,541	1,122,499
2019	1,589,868	0.5993	2,010,376	1,204,085
2020	1,745,425	0.6262	2,066,442	1,291,229
2021	1,662,158	0.7008	1,986,012	1,391,463
2022	1,738,475	0.7012	2,091,683	1,463,302

- 가중치로 보정된 연도별 추정치와 실제 수급 가구 수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에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예를 들면 2015년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는 77만 가구였으나, 2016년 약 73만명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표 V-1>의 2열(“추정치”)은 추정오차를 보정하지 않은 추정치이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표 V-1>의 5열(“가중치 보정 추정치”)은 추정오차를 보정한 추정치이며, 2016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실제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추이와 동일함

<그림 V-1> 연도별 실제 수급 가구 수와 연도별 가중치 보정 수급 가구 수
(단위: 만 가구)



나. 연도별·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결과

□ <표 V-2>, <표 V-3>, <그림 V-2>에는 권역별·연도별 실제 주거급여 수급 가구수와 가중치 적용 추정치를 정리하였는데, 이를 보면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실제 수급가구수와 추정 수급가구수가 모든 권역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권역별 구분은 서울, 인천·경기,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으로 구분됨
 - － 동북권은 대구, 경북, 강원;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동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으로 구분됨

□ 본고의 전망모형에서는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아래에 제시된 연도별·권역별 수급가구수 추정치를 분석자료로 사용함

<표 V-2> 연도별 권역별 실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단위: 가구)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2015	133,536	165,464	133,429	122,496	135,973	79,325
2016	137,348	164,691	121,359	109,209	127,605	73,095
2017	141,675	167,952	120,308	106,991	128,711	72,617
2018	165,018	203,991	134,497	119,970	149,272	84,122
2019	189,158	234,429	146,283	126,310	166,208	90,379
2020	224,836	274,568	162,621	138,062	190,912	101,902
2021	247,549	301,929	167,632	136,496	205,674	105,506
2022	257,840	317,349	174,486	141,852	217,403	110,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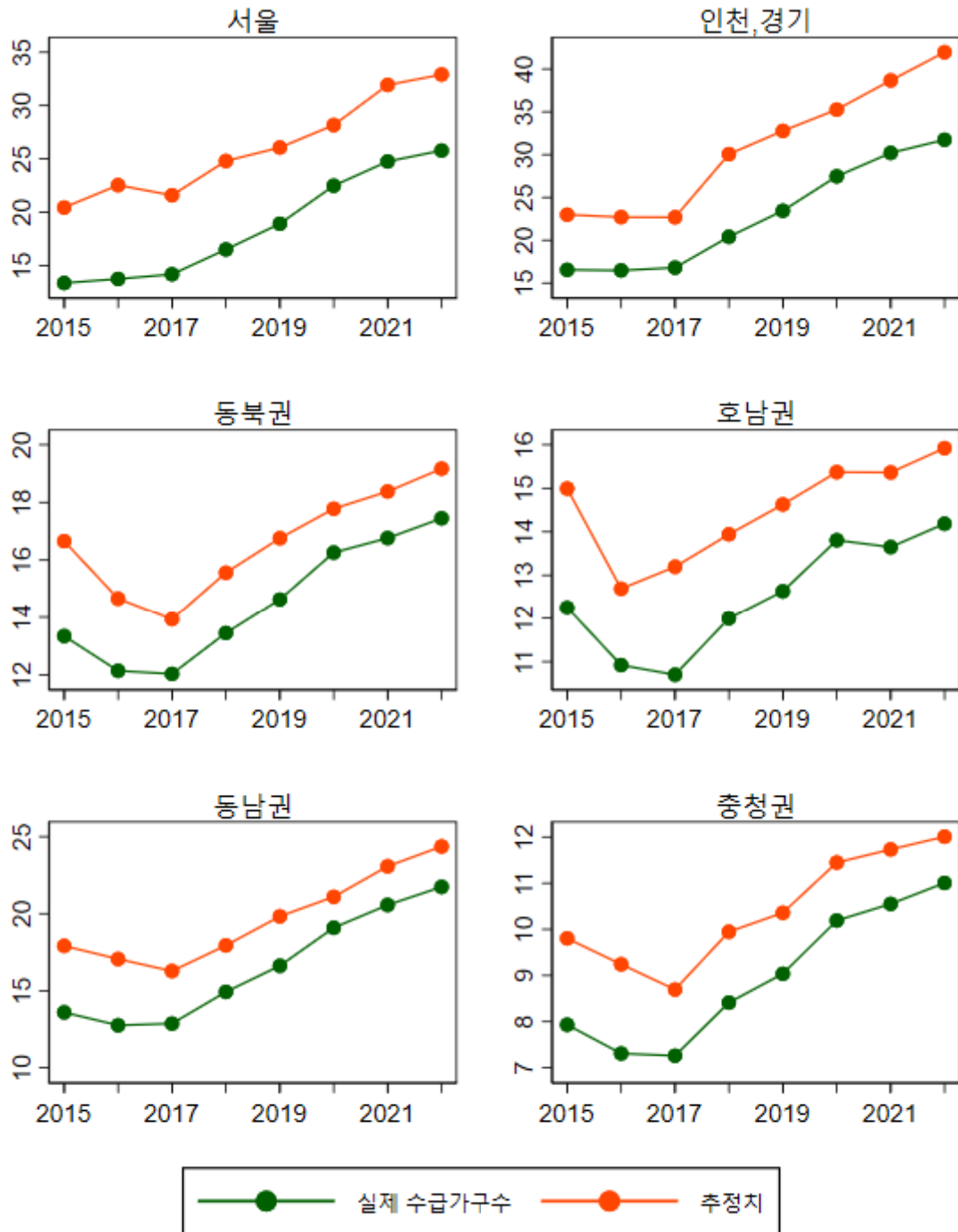
<표 V-3> 연도별 권역별 가중치 적용 추정치

(단위: 가구)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2015	204,375	235,639	166,581	149,938	179,132	98,035
2016	225,305	228,649	147,878	126,898	171,028	92,425
2017	215,830	230,929	139,314	131,958	163,709	87,465
2018	248,035	277,433	161,828	146,535	192,707	103,802
2019	260,627	299,480	174,134	152,514	216,863	106,813
2020	281,669	333,903	183,183	161,127	234,260	120,116
2021	319,305	354,008	190,671	164,084	250,404	120,788
2022	329,096	388,468	204,357	165,123	263,519	123,617

<그림 V-2> 연도별 실제 수급가구수와 연도별 가중치 보정 수급가구수

(단위: 만 가구)



2. 시계열 모형 추정 및 전망모형 설계

- 먼저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선정하기 LASSO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결정요인을 선정함
- (LASSO 추정) 본고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8개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선형 LASSO 모형을 추정함
 - 첫째, 거시경제적 상황에 대한 변수로 다음의 5가지 변수를 고려함
 - － 경제성장률, 물가지수, 국고채이자율(3년), 상대적 빈곤율, 가구수
 - 둘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변수로 다음의 3가지 변수를 고려함
 - － 주택매매가격지수, 지가지수, 주택거래량,
- LASSO의 추정결과를 정리한 <표 V-4>를 살펴보면,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해 λ^* 에서 선정된 변수는 권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상대적 빈곤율, 권역별 가구수, 주택매매가격지수가 가장 일관적으로 나타남
 - LASSO 모형에서는 개별 λ 와 이에 상응하는 독립변수들을 추정하며, 예측오차를 최소화(혹은 모형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λ 를 선정함으로써 최적의 해를 도출함
 - 교차확인 LASSO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최적의 해에서 도출된 결정요인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5회, 가구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가 각각 2회, 지가지수가 1회 나타남
 - 조정 LASSO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최적의 해에서 도출된 결정요인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3회, 가구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가 각각 2회, 지가지수가 1회 나타남
- (결정요인 선정)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상대적 빈곤율과 권역별 가구수를 결정요인으로 선정하고, 모든 권역별 전망모형에 적용함
 - 본고의 분석자료의 시계열이 매우 짧아 2개를 초과하여 결정요인을 선정할 수 없음
 -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지가지수의 경우 주거급여 지급금액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일관적으로 결정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율과 권역별 가구수로 선정함

<표 V-4> LASSO 추정 결과

권역	λ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
Panel. A. 교차확인(Cross-Validation) LASSO			
수도권(서울)	2,624.37	3	가구 수, 주택매매가격지수, 거래량
수도권(인천, 경기)	6,513.93	2	지가지수, 상대적 빈곤율
동북권	5,026.90	1	상대적 빈곤율
호남권	2,532.54	1	상대적 빈곤율
동남권	3,062.33	2	가구 수, 상대적 빈곤율
충청권	2,776.50	2	주택매매가격지수, 상대적 빈곤율
Panel. B. 조정(Adaptive) LASSO			
수도권(서울)	6,456.87	2	가구 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수도권(인천, 경기)	2,680.43	1	지가지수
동북권	244.44	1	상대적 빈곤율
호남권	225.45	1	상대적 빈곤율
동남권	1,142.23	1	가구 수
충청권	30.70	2	주택매매가격지수, 상대적 빈곤율

□ (단위근 검정결과) <표 V-5>에는 권역별 수급가구수와 결정요인들에 대한 단위근 (unit-root) 검정을 실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모든 변수들에서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위근 검정방법으로는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제시된 표의 수치들은 단위근이 있다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한 p-value를 의미함
- 추정결과, 모든 변수들에서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10% 유의수준에서도 기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모든 변수들을 불안정한 시계열로 판단 가능함
- 이에 따라 안정적 시계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모두 변수들을 1계 차분하여 전방모형 추정에 활용함

<표 V-5>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 결과

권역	수준변수	1계 차분	단위근 유/무
Panel. A.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추정치			
수도권(서울)	0.9976	0.2043	Y
수도권(인천, 경기)	0.9531	0.0000	Y
동북권(대구, 경북, 강원)	0.7115	0.0000	Y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0.6681	0.3418	Y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0.9073	0.0000	Y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0.9095	0.0025	Y
Panel. B. 가구 수			
수도권(서울)	0.9451	0.7007	Y
수도권(인천, 경기)	0.2795	0.4455	Y
동북권(대구, 경북, 강원)	0.9779	0.4946	Y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0.9738	0.2777	Y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0.9613	0.2859	Y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0.9609	0.1900	Y
Panel. C. 상대적 빈곤율			
전국	0.6643	0.5617	Y

주: 제시된 수치는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p-value를 의미함

- (추정모형) 본고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ARDL과 VAR(1) 모형을 적용함
- 불안정한 시계열(I(1))의 경우 시계열 사이의 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여 공적분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분석자료의 시계열이 매우 짧아(8개) 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지 못하였음
 - 이에 1계 차분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ARDL과 VAR(1) 모형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대한 추정모형으로 활용함

□ (전망모형 선정의 기준) 본고의 전망모형은 본고의 전망모형은 복수의 예측력 지표(RMSE, 1~3년 PMSE)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세부항목에 대한 전망모형을 선정함

- 1차적으로는 RMSE와 1년 PMSE를 비교하여 예측오차가 더욱 작은 모형을 선택함
- 다만 RMSE와 PMSE를 비교하여서 1개의 우세한 모형을 선정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2년 PMSE와 3년 PMSE의 값을 비교하여서 전망모형을 선정함

□ (예측력 검증 및 전망모형 선정) <표 V-6>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대한 전망모형의 예측력 지표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전망모형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모형을 음영으로 처리함

-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RMSE와 1년 PMSE가 모두 VAR(1)의 예측오차가 작기 때문에 이를 선정함
- 한편, 동남권의 경우 RMSE는 VAR(1)이 1년 PMSE는 ARDL이 예측오차가 낮아 1차 기준으로 선정이 어려워, 2년 PMSE가 VAR(1) 모형을 지지하므로 이를 선정함

<표 V-6> 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모형의 예측력 비교

	모형	RMSE	3년 PMSE	2년 PMSE	1년 PMSE
수도권(서울)	ARDL	11617	70323	151160	19940
	VAR	5121	80023	18056	16460
수도권(인천, 경기)	ARDL	36713	399957	3782735	17278
	VAR	34851	707485	192909	98477
동북권	ARDL	7897	541247	65270	7457
	VAR	9469	200230	31460754	32826
호남권	ARDL	2412	8858	6962	4877
	VAR	464	10779	51436	1567
동남권	ARDL	13394	255400	83173	11162
	VAR	9226	318269	168324	25439
충청권	ARDL	7467	163987	37795	12129
	VAR	3601	87300	184099	5857

- 결론적으로 전망모형의 일관성을 위해 상대적 빈곤율과 권역별 가구수를 결정요인으로 하는 VAR(1) 모형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대한 전망모형으로 선정함
 - VAR(1) 모형이 4회, ARDL 모형이 2회 선정되었으나,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추정에서 권역별로 다른 모형을 선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음
 - 이에 더욱 우세하게 선정된 모형인 VAR(1) 모형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전망모형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함
 - 이에 따라 본 모형에서 사용하는 최종적인 전망모형은 VAR(1)모형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전개한 식을 권역별로 추정하여 전망함

$$\text{가구수}_t = \beta_{11}\text{수급가구수}_{t-1} + \beta_{12}\text{상대적빈곤율}_{t-1} + \beta_{13}\text{가구수}_{t-1} + \epsilon_{1t} \quad (1)$$

$$\text{상대적빈곤율}_t = \beta_{21}\text{수급가구수}_{t-1} + \beta_{22}\text{상대적빈곤율}_{t-1} + \beta_{23}\text{가구수}_{t-1} + \epsilon_{2t} \quad (2)$$

$$\text{수급가구수}_t = \beta_{31}\text{수급가구수}_{t-1} + \beta_{32}\text{상대적빈곤율}_{t-1} + \beta_{33}\text{가구수}_{t-1} + \epsilon_{3t} \quad (3)$$

3. 전망모형 추정결과

- 본 절에서는 앞서 설계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전망모형을 추정하고, 향후 10년간의 전망치를 예측한 결과를 제시함
 - 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전망모형을 추정하여 전망치를 예측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전국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전망치를 예측함
- 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추이를 정리한 <표 V-7>과 <그림 V-3>을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수급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의 타 권역 대비 큰 수급가구수 증가폭, 실제 수급가구수와 추정치 간 격차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의 기본재산 공제액 가장 크게 상향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기준 예측치와 실제치는 약 1만 가구 차이가 있는 타 권역과 달리 서울 약 7만 가구, 인천·경기 약 10만 가구 차이가 나타남
 - 수도권(서울)은 2023년 전년 대비 약 1.42만 가구 증가한 이후, 2027년 42.67만 가구, 2032년 52.72만 가구로 매년 약 2만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인천, 경기)은 2023년 약 1.57만 가구 증가한 이후, 2027년 56.40만 가구, 2032년 71.51만 가구로 매년 약 3만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동북권은 2023년 19.8만 가구, 2027년 22.6만 가구, 2032년 26.1만 가구로 매년 약 6천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호남권은 2023년 17.11만 가구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후, 매년 약 8천 가구 이내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동남권은 2023년 24.59만 가구로 전년 대비 적게 증가하나, 2027년 29.78만 가구, 2032년 35.60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충청권은 2023년 수급가구수가 감소한 이후, 매년 약 4천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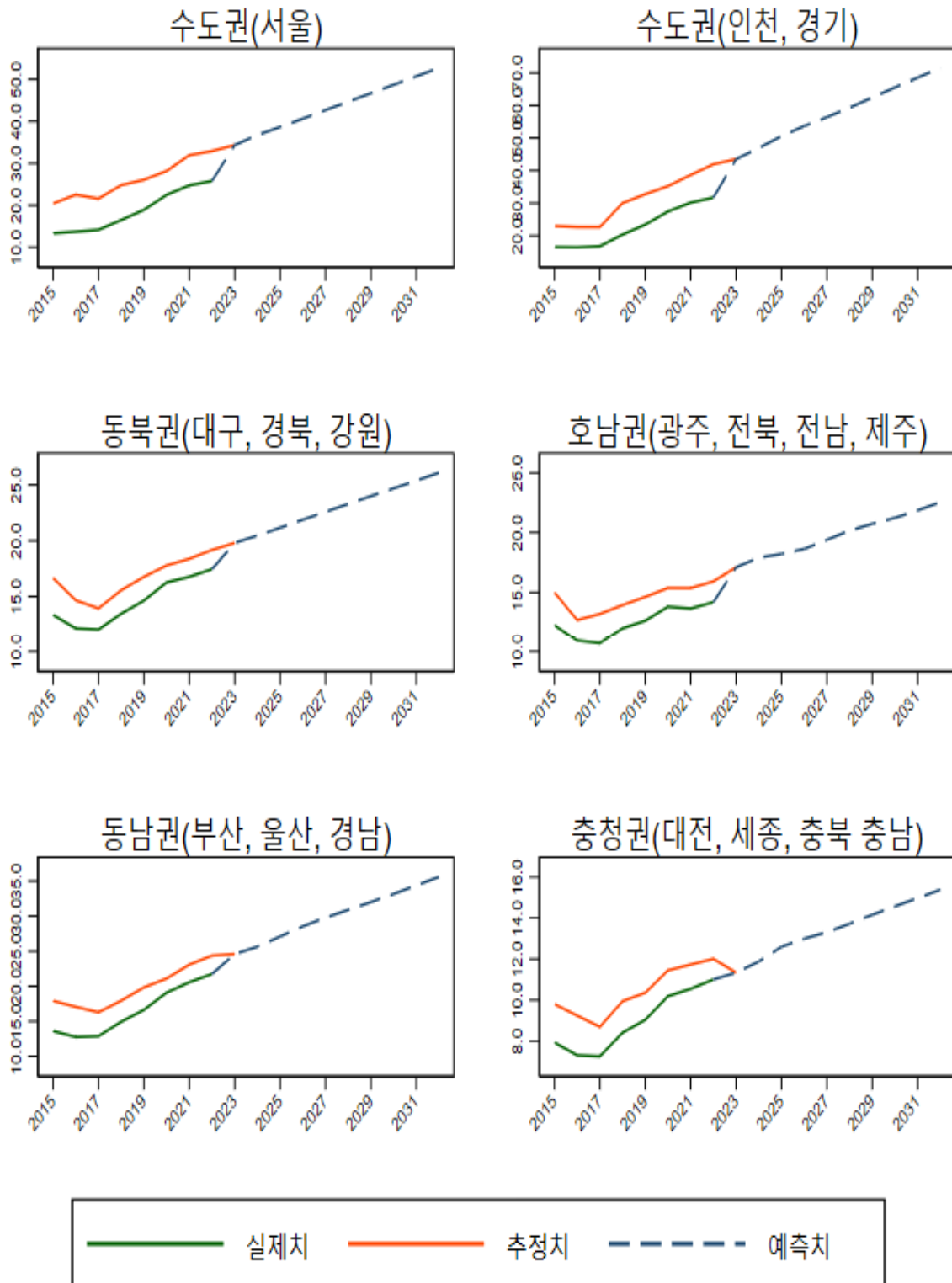
<표 V-7> 2023년 제도 적용 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전망결과

(단위: 만 가구)

연도	수도권(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실제	예측 (추정)	실제	예측 (추정)	실제	예측 (추정)	실제	예측 (추정)	실제	예측 (추정)	실제	예측 (추정)
2015	13.35	20.44	16.55	22.99	13.34	16.66	12.25	14.99	13.60	17.91	7.93	9.80
2016	13.73	22.53	16.47	22.69	12.14	14.66	10.92	12.69	12.76	17.06	7.31	9.24
2017	14.17	21.58	16.80	22.68	12.03	13.93	10.70	13.20	12.87	16.28	7.26	8.70
2018	16.50	24.80	20.40	30.05	13.45	15.56	12.00	13.94	14.93	17.94	8.41	9.95
2019	18.92	26.06	23.44	32.77	14.63	16.76	12.63	14.63	16.62	19.83	9.04	10.36
2020	22.48	28.17	27.46	35.26	16.26	17.78	13.81	15.37	19.09	21.10	10.19	11.45
2021	24.75	31.93	30.19	38.66	16.76	18.38	13.65	15.36	20.57	23.08	10.55	11.73
2022	25.78	32.91	31.73	41.96	17.45	19.17	14.19	15.92	21.74	24.37	11.00	12.01
2023	34.33		43.53		19.80		17.11		24.59		11.34	
2024	36.73		46.94		20.46		17.91		25.64		11.88	
2025	38.65		50.57		21.16		18.21		27.09		12.60	
2026	40.63		53.66		21.88		18.63		28.54		12.99	
2027	42.67		56.40		22.59		19.40		29.78		13.31	
2028	44.67		59.30		23.30		20.17		30.89		13.72	
2029	46.68		62.42		24.00		20.73		31.99		14.15	
2030	48.69		65.53		24.69		21.24		33.17		14.57	
2031	50.71		68.54		25.39		21.86		34.38		14.97	
2032	52.72		71.51		26.09		22.54		35.60		15.38	

<그림 V-3> 2023년 제도 적용 권역별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전망결과

(단위: 만 가구)



- <표 V-9>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예상되는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추정한 전망치를 제시하였으며, <그림 V-4>, <그림 V-5>에는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함
 - 제시된 표의 마지막 열은 2023~2026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정된 제도변화를 반영한 전망 결과를 모두 연도별로 다르게 추정한 결과를 제시함
 - 2023년에는 기본재산액 공제의 기준 변화와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로 확대한 수급요건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 이에 더하여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9%이하,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로 수급요건이 변화하는 것을 모두 고려한 전망치를 제시함
 -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2026년 제도를 적용하여 추정한 전망치를 제시함
- 이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매년 약 10만 가구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2년 229.36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제도를 반영하였을 때, 2022년 실제치에 비해 추정치가 약 24.43만 가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기본재산액 공제가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개편된 기본재산액 공제 급지 변화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공제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타 지역의 공제액도 대체로 증가하였음
 - 이로 따라, 지역별 수급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수급가구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23년 이후의 수급가구수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예정된 제도변화를 반영한 2024~2026년의 전망치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에 연간 약 10만 명의 수급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수급요건 완화가 수급가구수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함

<표 V-8> 전국 수급 가구 수 전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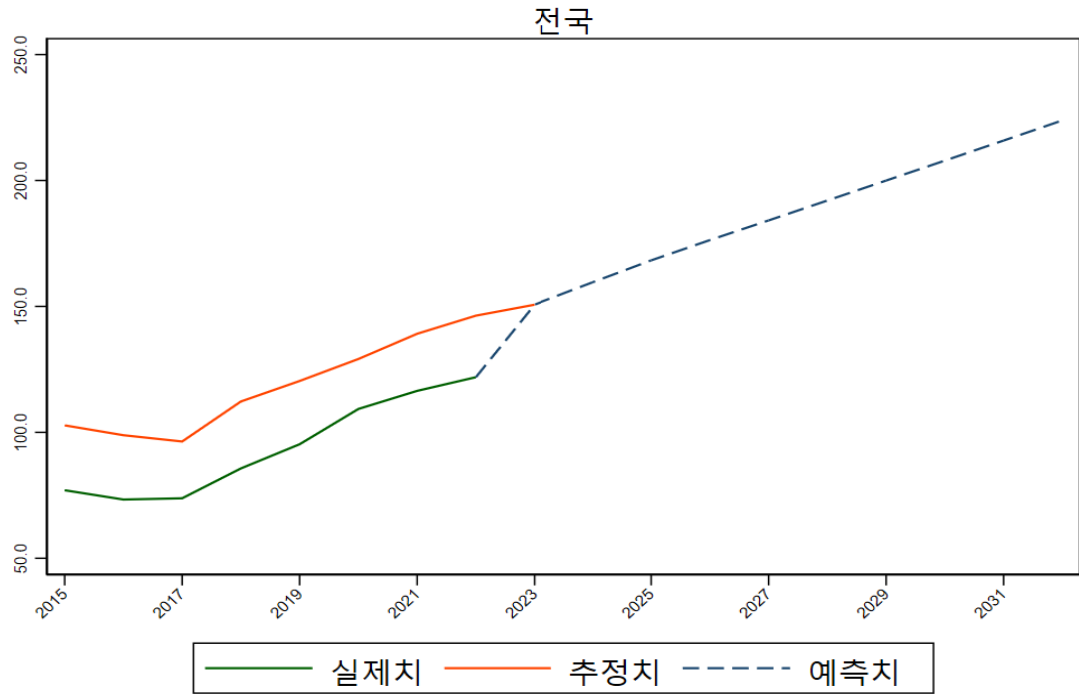
(단위: 만 가구)

연도	실제 수급가구수	2023년 제도 적용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수급가구 최종 전망치
2015	77.02	102.79	104.17	105.80	107.30	77.02
2016	73.33	98.87	100.04	101.61	102.39	73.33
2017	73.83	96.36	97.03	98.11	99.18	73.83
2018	85.69	112.25	114.03	115.24	116.84	85.69
2019	95.28	120.41	121.65	122.77	124.48	95.28
2020	109.29	129.12	130.58	131.68	133.43	109.29
2021	116.48	139.15	141.06	142.97	144.13	116.48
2022	121.90	146.33	147.98	149.30	151.99	121.90
2023	-	150.70	151.37	152.19	154.69	150.70
2024	-	159.55	160.23	161.25	163.92	160.23
2025	-	168.28	168.94	170.03	172.62	170.03
2026	-	176.33	177.04	178.07	180.83	180.83
2027	-	184.14	184.92	185.98	189.02	189.02
2028	-	192.04	192.79	193.91	197.30	197.30
2029	-	199.98	200.57	201.64	205.29	205.29
2030	-	207.89	208.32	209.26	213.06	213.06
2031	-	215.84	216.22	217.10	221.05	221.05
2032	-	223.84	224.21	225.14	229.36	229.36

주: 음영 처리된 영역의 수치는 주거급여 실제 수급가구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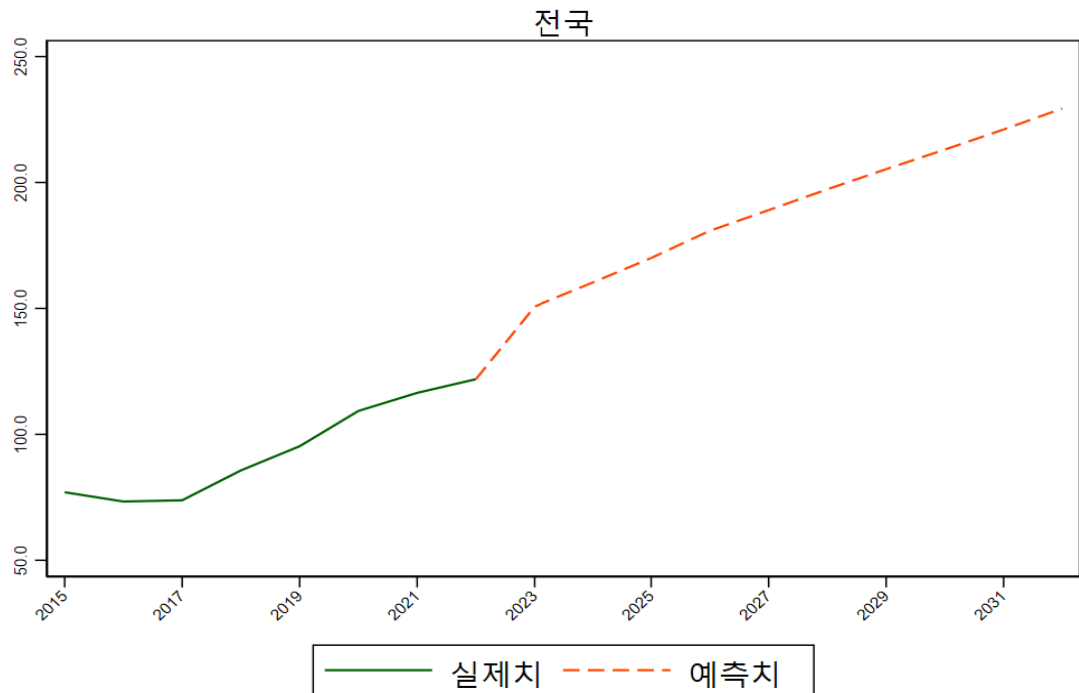
<그림 V-4> 2023년 제도 적용 전국 수급가구수 전망 결과

(단위: 만 가구)



<그림 V-5> 전국 수급가구수 최종 전망 결과

(단위: 만 가구)



- (주거급여 재정소요액 추정) 주거급여 재정소요액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전망치에 권역별 평균 임차급여액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함
- <표 V-9>에 제시한 권역별 임차급여 평균 지급액은 권역별 실제 임차급여 집행액을 권역별 실제 수급가구수로 나누어 산출함
 - 따라서 권역별 재정소요액은 권역별·연도별 수급가구수 추정치에 권역별·연도별 평균 임차급여 지급액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이때, 2022년까지는 권역별·연도별 평균 임차급여 지급액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급가구수 추정치에 곱하여 산출함
 - 2023년부터는 임차급여 지급기준액이 연평균 2%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권역별 주거급여 평균 지급액을 추정된 수급가구수에 곱하여 주거급여 재정소요액을 산출함
 - 본고에서는 과거 평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의 증가액을 가정함
 - 하지만 이러한 지급기준액의 증가치에 대한 가정은 전망 모형 설계 시 정책적·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여기서는 모형 설계의 하나의 예로 2%를 가정한 추정치를 제시함

<표 V-9> 권역별 임차급여 평균 지급액

(단위: 만 원)

	서울	인천 경기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2015	14.11	12.55	9.68	9.20	9.74
2016	14.03	12.63	9.85	9.28	9.91
2017	14.74	13.31	10.25	9.71	10.38
2018	16.47	14.79	11.05	10.47	11.29
2019	17.30	15.34	11.63	10.98	11.97
2020	19.88	17.48	13.00	12.33	13.42
2021	22.17	18.76	14.21	13.52	14.63
2022	22.84	19.54	14.51	13.72	15.33

□ 이같은 방식에 근거하여 추정한 주거급여 재정소요액 전망치를 <표 V-10>에는 제시하였으며, <그림 V-6>은 이를 도식화함

○ <표 V-9>과 동일하게 <표 V-10>에는 연도별 제도변화를 모두 적용하였을 때의 재정소요액 전망치를 제시함

□ (재정소요액 전망) 이에 따르면, 주거급여 중 주거급여의 재정소요액은 2023년 2743.26억 원에서 2032년 5046.19억 원까지 매년 약 2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V-10> 전국 주거급여 재정소요 전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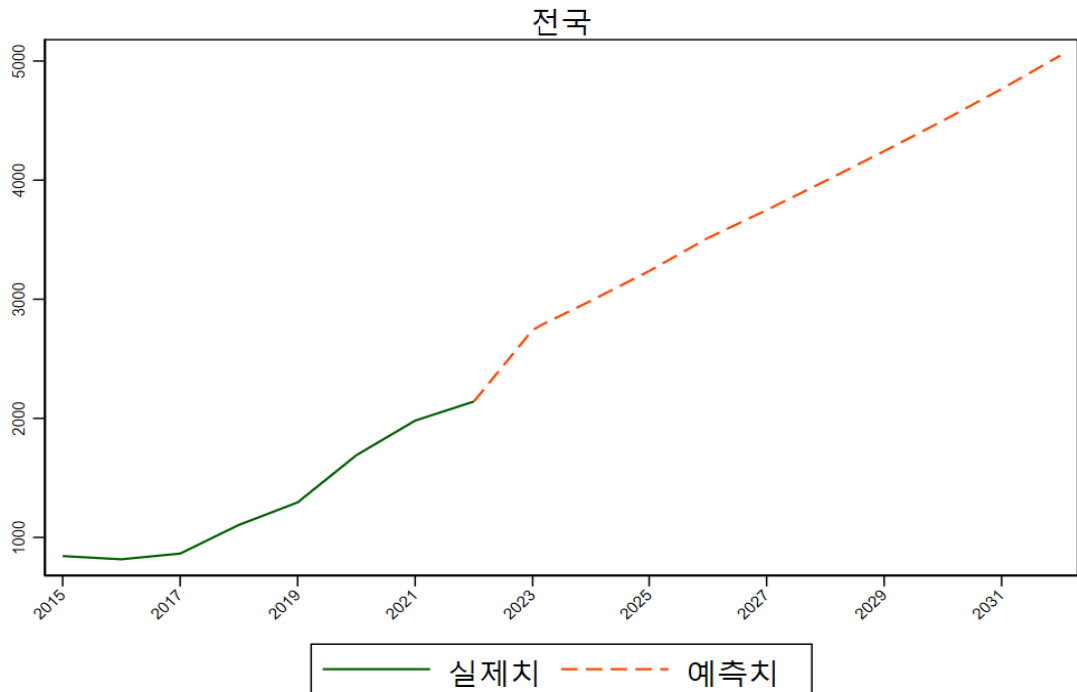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연도	2022년 집행액	2023년 제도 적용	2024년 제도 적용	2025년 제도 적용	2026년 제도 적용	최종 전망치
2015	843.69	1141.14	1156.52	1175.01	1192.36	843.69
2016	816.59	1120.61	1134.12	1153.09	1162.22	816.59
2017	864.46	1145.19	1153.59	1166.72	1180.20	864.46
2018	1105.25	1478.74	1503.21	1519.36	1540.85	1105.25
2019	1294.43	1660.84	1678.89	1695.20	1720.10	1294.43
2020	1690.75	2021.58	2045.65	2062.83	2091.36	1690.75
2021	1981.00	2397.76	2431.32	2465.01	2485.11	1981.00
2022	2141.26	2606.58	2637.36	2661.40	2709.53	2141.26
2023	-	2743.26	2757.62	2772.46	2816.52	2743.26
2024	-	2970.25	2985.05	3004.34	3050.29	2985.05
2025	-	3200.76	3215.98	3236.52	3283.04	3236.52
2026	-	3426.48	3442.97	3462.78	3513.98	3513.98
2027	-	3654.38	3671.64	3692.33	3748.71	3748.71
2028	-	3891.77	3908.36	3929.96	3993.18	3993.18
2029	-	4139.27	4153.33	4174.32	4243.25	4243.25
2030	-	4394.83	4406.49	4425.67	4498.82	4498.82
2031	-	4659.01	4669.68	4688.03	4765.67	4765.67
2032	-	4932.51	4942.84	4962.18	5046.19	5046.19

주: 음영 처리된 영역의 수치는 주거급여 실제 집행액을 의미함

<그림 V-6> 전국 주거급여 재정소요 최종 전망 결과

(단위: 억 원)



- (한계점) 본 연구의 전망모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새로운 전망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 본 연구의 분석자료 시계열이 8년으로 매우 짧아, 유의미한 장기 전망치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 본 연구의 전망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경된 시점인 2015부터 자료가 관리되고 수집되어 2015년 이후의 자료만 활용 가능함
 - － 짧은 시계열로 인해 현재 모형에는 전반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수급가구수 감소의 추세가 모형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둘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 문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시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미시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정치의 정확성이 감소하였으며, 더불어 전망모형에서 시도별 인구 변화의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였음
 -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으로부터 가금복 자료의 시도 정보를 2018년부터 일부 수집

- 할 수 있었으나, 그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문제로 제공받지 못하였음
- 하지만 본고의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시 급지 선정 시 시도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이와 같은 한계로 권역별 자료를 사용함
 - 또한 시도별 인구 및 가구수의 변화 추세가 달라, 이러한 추세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추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권역별 총합 자료에 따라 추세 변화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나타남
 - 예를 들어, 충남의 경우 가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충청권으로 묶여 있어서 권역별 가구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저소득·저자산 가구에 대한 표본 관측치가 풍부하지 않아, 제도변화 적용 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관측치가 희소할 경우 1개의 관측치가 상당수의 가구를 대표하게 되도록 가중치가 구성되므로, 제도변화로 수급대상가구가 매우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제6장. 결론

1. 요약

-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저주거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
 - 정부는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 현행 47%까지 확대하였고 이후 수급자격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며,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지난 가구 내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있어, 비적정주거 거주자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음
- 이처럼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상당한 제도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주거급여 재정소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주거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제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엄밀한 전망모형을 구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기존의 재정소요 추계방법론에서는 이처럼 빈번한 제도변화를 엄밀히 추계할 수 있는 전망모형이 부재한 상태이며, 이에 주거급여에 대하여 제도변화를 반영한 엄밀한 전망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는 주거급여 급격한 제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전망모형을 개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주거급여 재정소요 전망치를 제시함
 - 정치하고 안정적인 전망모형에 기반한 주거급여 재정소요 전망을 통해 예측력을 제고하여 재정지출 예측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범위)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 그 중 임차급여 수급가구수를 추정하여 전망하는 모형을 설계함
 -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가구 분리지급의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 중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이 달라 수급가구수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추정대상에서 배제함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또한 주거급여 수급대상가구 중 청년분리가구를 자료를 통해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추정에서 배제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차급여 수급가구수만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소요액 전망치를 추정함
 - 다행히 주거급여는 임차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거급여 재정소요액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실질적으로 본고의 전망모형은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수급가구수 및 재정소요 전망 모형임

□ (제도 현황 및 변화) 주거급여는 2015년 통합형 급여체제에서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경되면서 급격한 제도변화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변화가 나타남

- 통합형 급여체제에서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주거급여는 개별급여로 독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급요건, 급여 지급체계, 집행체계 등이 크게 변화함
 - 수급요건은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최초 43%에서 2023년 현재 47%) 이하인 가구로 변화함
 - 지급체계는 통합형에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맞춤형에서는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구분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은 통합형에서 정액급여 체계였으나 맞춤형에서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정률형 급여체제로 변경됨
- 맞춤형 급여체제 하에서도 연도별로 조금씩 제도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맞춤형 급여체제의 주요한 제도 변화 중 하나로 부양의무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하다가 2018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됨
 - 또한 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여, 거주지가 다른 청년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강화함
- 2023년의 주요 제도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요건이 기준중위소득 47%이하로 완화됨

-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 기본재산액 체계를 기존의 3급지 체계에서 4급지 체계로 변화하면서 기본재산액 또한 확대함
- 향후 제도변화로는 2027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까지 수급요건을 완화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
 - 2024년 48% 이하, 2025년 49%, 2026년 50%이하로 점진적으로 수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임

□ (전망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시계열 모형을 결합하여, 주거급여의 제도변화를 반영하면서 주거급여 재정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맞춤형 전망모형을 제안함

- 즉, 미시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제도변화를 반영하고,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여 향후 예측치를 제시하여, 두 방법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망모형을 구현함

□ (전망모형 설계)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거급여 전망모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설계함

- 1단계: 미시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연도의 제도 현실을 반영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추정함
- 2단계: 주거급여 실측 자료를 사용하여 미시시뮬레이션을 추정치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가중치를 도출함
- 3단계: 현행 (혹은 미래) 제도변화를 과거에 적용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과거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와 재정소요를 역산하여 추정함
- 4단계: 3단계의 추정결과에 2단계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본의 추정오차를 보정함
 - 4단계에서 추정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는 현행 혹은 미래의 제도변화를 반영하였을 때의 수급가구수의 추정치이며, 5단계에서는 이를 분석자료로 활용함
- 5단계: 4단계에서 추정한 추정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시계열 전망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여 주거급여 재정소요에 대한 예측치를 전망
 - 다양한 기준 (RMSE, PMSE)을 통해 추정된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여 가장 예측력이 높은 모형을 선정하고 전망을 시행함

- (전망모형 구축)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권역별 가구수와 상대적 빈곤율을 결정요인으로 하는 VAR(1) 모형을 주거급여 전망모형을 구축함
 - LASSO의 방법론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권역별 가구수와 상대적 빈곤율이 선정됨
 - － 권역별로 결정요인이 소폭 다르지만 권역별 가구수와 상대적 빈곤율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결정요인을 전 모형에 적용함
 - RMSE와 PMSE의 기준으로 ARDL과 VAR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 권역별로 예측력이 높은 모형이 일부 달랐지만 일관적으로 VAR 모형의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모형을 권역별 추정 모형에 일괄 적용함
 - 이를 통해 주거급여 전망모형은 권역별 가구수와 상대적 빈곤율을 결정요인으로 하는 VAR(1) 모형을 선정됨

- (전망결과) 본 연구에서 구축한 전망모형을 바탕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와 지급금액을 추정한 결과, 2023년 제도 변화로 인해 수급가구 및 지급액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예상되는 제도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를 추정한 결과, 2023년 150.7만 가구이며, 2024년 이후 약 10만 가구씩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재정소요액은 2023년 2743.26억 원에서 2032년 5046.19억 원까지 매년 약 2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망결과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의 전망결과는 2023년 제도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한계는 존재하나, 제도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계)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서는 2023년의 제도변화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와 재정소요액이 실제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재산액 공제의 급지체계 변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본 연구의 추정방법론 문제라기 보다는 분석자료의 표본 구성의 문제와 지역별 제도 적용의 난해함에서 기인함
 - (의의) 본 연구의 전망모형 설계를 통해 제도변화를 반영한 전망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기

존 실제 수급가구수 및 지급금액 증가 속도보다 보다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수급요건 완화, 부양의무요건 폐지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급가구수와 지급금액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이에 실제 수급가구수와 지급금액에 대한 전망모형을 구성할 경우 향후 전망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과대추정할 우려가 있음
-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제도변화를 반영한 전망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실제 수급가구수의 증가속도 보다는 보다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전망치를 도출하였음

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미시 시뮬레이션과 시계열 모형을 결합한 모형을 실험적으로 구축하여 제도변화를 반영한 주거급여의 전망모형을 엄밀하게 구성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

- 첫째,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 본 연구의 분석자료 시계열이 8년으로 매우 짧아, 유의미한 장기 전망치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본 연구의 전망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된 시점인 2015부터 자료가 관리되고 수집되어 2015년 이후의 자료만 활용 가능함
 - 짧은 시계열로 인해 현재 모형에는 전반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수급가구수 감소의 추세가 모형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둘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 문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시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미시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정치의 정확성이 감소하였으며, 더불어 전망모형에서 시도별 인구 변화의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으로부터 가금복 자료의 시도 정보를 2018년부터 일부 수집할 수 있었으나, 그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문제로 제공받지 못하였음
 - 하지만 본고의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과정 중 급지 선정 시 시도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이와 같은 한계로 권역별 자료를 사용함
 - 또한 시도별 인구 및 가구수의 변화 추세가 달라, 이러한 추세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추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권역별 총

합 자료에 따라 추세 변화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나타남

- 예를 들어, 충남의 경우 가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충청권으로 묶여 있어서 권역별 가구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저소득·저자산 가구에 대한 표본 관측치가 풍부하지 않아, 제도변화 적용 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관측치가 희소할 경우 1개의 관측치가 상당수의 가구를 대표하게 되도록 가중치가 구성되므로, 제도변화에 따라 수급대상가구가 매우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 (향후 과제)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욱 정치한 주거급여 전망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음

- 첫째,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수집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가구수와 지급금액에 대한 시계열을 확보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망 모형 설계의 방법에 따라 더욱 예측력이 높은 전망모형을 구축할 필요
- 둘째, 본 연구의 한계는 대체로 분석자료의 한계에서 기인하므로 시도별 정보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대상가구에 대한 풍부한 관측치를 확보하고 있는 가용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전망모형 설계의 방법론에 따라 전망모형을 재설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복지패널조사의 경우 저소득·저자산 가구에 대한 관측치를 과표집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있어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관측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의 주거지에 대한 시도 정보 또한 수집하고 있음
 - 이에 복지패널조사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대한 훌륭한 대체 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 국토교통부, 각년도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각년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각년도
- 강미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9.
- 고영선, 「세수추계모형의 예측력 비교」, 『KDI정책연구』, 제22권 제1·2호, 2000, pp. 3-55.
- 국회예산정책처,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0.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모형: 기존 모형의 검토 및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1.
- 김문길·김태완,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7.
- 김필현·이정현,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 개발-서울특별시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
- 김현아·박철, 『서울시 세입 예측을 위한 모형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김혜승,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국토연구원, 2017.
- 김혜승,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 국토연구원, 2018.
- 김혜승·강미나·박미선·제갈영, 「주거급여제도의 확대 개편과 향후 과제: 임차가구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2014.10.27.
- 박무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모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8권 제2호, 2012, pp. 73-94.
- 박정수, 『특별회계·기금의 시계열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 자료포락분석의 쟁점과 관리제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제2020권, 2020, pp. 1-29.
- 박형수·전병목,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9, pp. 58-251.
- 성명재·박노옥,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3.
- 여은정·이영환, 「지방세 세수추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제9권 제4호, 2008, pp. 108-129.
- 이기환, 『제주형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 이길제, 「주거급여의 성과와 발전 방향」, 『도시와 빈곤』, 제118호 (2022년 3월호), 2022, pp1-7.
- 이석환, 『서울시 중기 지방세수 추정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2016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최종보고서, 2016.
- 이영희·조기현, 『지방세수 예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광역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998.
- 이태석, 『구조변화를 고려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모색 (Tax revenue forecasts with possible structural changes)』,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5.
- 이태석·최용옥·김도형, 『공적연금 재정추계모형 개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을 중심으로』, KDI, 2016, pp. 160-194.
- 이태진, 「청년층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가」, 『보건복지포럼』, 2017년 2월 통권 244호, 2017, pp38-53.
- 이현선·박태규, 「지방세 추계모형 연구: 지수평활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2호, 2007, pp. 65-90.
- 조택희, 「지방세 세수추정모형에 관한 연구-충청북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7권, 2005, pp. 17-40.
- 진미윤, 「주거급여제도 평가: 선정기준, 급여 수준과 전달체계」, 『보건복지포럼』, 2016년 11월 통권 241호, 2016, pp43-63.
- 진미윤·서동훈, 『주거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한 주거급여 전달체계 강화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8.
- 하성규, 「청년주거정책의 과제」, 『국토시론』, 2021년 12월 통권 482호, 2021, pp2-4.
- 홍우형, 『국세외수입 추계방법 연구 및 전망모형 개발』, 국회예산정책처, 2020.
- 홍우형·김원기, 『주요 기금수입 추계방법 연구 및 전망모형 개발』, 국회예산정책처, 2022.
- 홍인옥, 「국민 주거복지의 향상」,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실태와 지원방안 -비정상적인 주거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연구원, 2004, pp32-40.
- Chimilila, C. “Forecasting tax revenue and its volatility in Tanzania”, African Journal of Economic Review, Vol.5, No.1, 2017, pp.84-109.
- Cirincione, C., Gurrieri, G. A., & Sande, B. “Municipal Government Revenue Forecasting: Issues of Method and Data”, Public Budgeting & Finance, Vol.19, No.1, 1999, pp.26-46.

- Duncan, G., Gorr, W., & Szczypula, J. "Bayesian Forecasting for Seemingly Unrelated Time Series: Application to Local Government Revenue Forecasting", *Management Science*, Vol.39, No.3, 1993, pp.275-293.
- Fullerton Jr, T. M. "A composite approach to forecasting state government revenues: Case study of the Idaho sales tax",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Vol.5, No.3, 1989, pp.373-380.
- George W. D., & David M. R. "Designed Experiments for Classification Problems",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Vol.34, No.11, 1983, pp.1069-1077.
- Makananisa, M. P. "Forecasting annual tax revenue of the South African taxes using time series Holt-Winters and ARIMA/SARIMA Models", South Africa: University of South Africa., 2015.
- Rich, R., Bram, J., Haughwout, A., Orr, J., Rosen, R., & Sela, R. "Using Regional Economic Indexes to Forecast Tax Bases: Evidence from New York",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87, No.4, 2005, pp.627-634.
- Sexton, T. "Forecasting property taxes: A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methods, *National Tax Journal*, Vol.40, No.1, 1987, pp.47-59.
- Shkurti, W. J. "A user's guide to state revenue forecasting.", *Public Budgeting & Finance*, Vol.10, No.1, 1990, pp.79-94.
- Streimikiene, D., Rizwan Raheem, A., Vveinhardt, J., Pervaiz Ghauri, S., & Zahid, S. "Forecasting tax revenues using time series techniques—a case of Pakistan", *Economic research-Ekonomska Istrazivanja*, Vol.31, No.1, 2018, pp. 722-754.